

www.minjoo.kr

2010. 6. 2(수)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필승매뉴얼

V2010



한결같이! 든든하게!

민주당

DEMOCRATIC PARTY

www.minjoo.kr

2010. 6. 2(수) 실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를 위한 필승매뉴얼



한결같이! 든든하게!

민주당

DEMOCRATIC PARTY

목 차

I. 선거운동 개론(概論)

1. 선거운동의 개념	7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8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0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1
5. 개정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	13

II. 단계별 선거준비와 선거운동방법

1. 선거 및 회계사무 주요 일정표	29
2.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30
3. 입후보준비와 활동방법	31
4.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36
5. 여론조사	38
6. 선거기획단 구성 및 업무분장(안)	41
7. 예비후보자등록과 각종 신고·신청 사항	42
[참고]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지급기준	54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55
9. 기간별 제한·금지사항	56

III. 후보자등록 및 법정선거운동방법

1. 후보자등록	61
2. 법정선거운동방법과 준비사항	63
3.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비교표	69

IV. 매니페스토 작성 및 활용

1. 매니페스토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73
2. 매니페스토 작성 : 기본 원칙과 작성요령 및 작성 포인트	75
3. 매니페스토 작성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사례	77
4. 시민참여형 매니페스토의 작성 프로세스와 정책사례	84

IV. 선거회계 실무

1.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지출 흐름도	89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사전 준비	90
3. 선거회계의 기본 원칙	91
4. 선거회계 유의사항	92
5. 선거비용 예산(안) 편성 기준표	93
6.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예산(안) 편성 기준표	94

부록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방법 일람표	97
--------------------------------	----

부록2.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연락처	113
-------------------------------	-----

I. 선거운동 개론(概論)

1. 선거운동의 개념

●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행위,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운동기간

2010. 5. 20(목) ~ 6. 1(화), 13일간

<선거운동기간의 예외>

- ◇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선거기간개시일 전일인 2010. 5. 19까지 예비후보자의 신분으로 법 제60조의3 및 제60조의4(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의 규정에 의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 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포함)는 언제나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2.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 시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되지 않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이 가능함

- ① 예비후보자
- ②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공무원 또는 외국인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가능함)
- ③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 ④ 예비후보자의 수행원 1명
- ⑤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의 수행원 1명
- ⑥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예비후보자 시기 신분별 선거운동의 제한

신분별	가능한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	명함, 외벽 현수막, 전화, 문자메시지, 어깨띠, 표지(점퍼 등), 예비후보자홍보물, 예비후보자공약집(단체장선거),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
배우자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독립적으로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예비후보자 수행원	예비후보자 수행원(1명)은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배우자 수행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수행원(1명)은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가능

● 후보자 시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운동이 제한·금지된 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은 선거운동이 가능함

① 후보자

② 후보자의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중 1인)

③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활동보조인

④ 기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자원봉사자)

※.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선관위에 선임신고 한 경우 선거운동이 가능함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예비)후보자의 범위>

-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 ◇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선임신고시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3.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②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함 ⇒ 1991. 6. 2일 이후 출생자)

③ 선거권이 없는 자

④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정무직공무원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 회위원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⑤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의 제한을 받는 공무원등(법 제53조제1항제 2호 내지 제8호)

☞ 법 제53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기관 등의 상근직원은 입후보제한을 받지 아니하나 선거운동은 할 수 없음

⑥ 향토예비군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주민자치위원회위원, 통·리·반의 장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2010. 3. 4(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하여야 함

⑦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등(시·도 및 구·시·군 조직 포함)의 대표자

<주1>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위 (4)부터 (7)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주2>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위 (4)부터 (7)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4.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선거별	예비후보자	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시·도지사선거	1개소	1개소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개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기초단체장선거	1개소	1개소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마다 1개소 -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선거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광역의원선거	1개소	1개소	설치할 수 없음
기초의원선거	1개소	1개소	

●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선 거 별		예비후보자	후 보 자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장	1명	1명	-
	선거연락소장	-	-	연락소마다 1명
	선거사무원	4명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수 이내 ☞ 구·시·군수가 10미만인 때에는 10인	연락소마다 읍·면·동수이내
	회계책임자	1명	1명	연락소마다 1명
기초단체장선거	선거사무장	1명	1명	-
	선거연락소장	-	-	연락소마다 1명
	선거사무원	2명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들 수 있는 선거사무원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들 수 있음	
	회계책임자	1명	1명	연락소마다 1명
광역의원선거	선거사무장	1명	1명	-
	선거사무원	1명	10명	
	회계책임자	1명	1명	
기초의원선거	선거사무장	1명	1명	-
	선거사무원	1명	8명	
	회계책임자	1명	1명	

5. 개정 정치관계법 주요 내용

● 지역구 시·도의원정수 및 후보자 추천방식 등 관련

구 분	종 전	개 정
시·도의회 의원 정수 (법 제22조)	○ 지역구수 : 626개(제주도 제외)	○ 지역구수 : 650개(제주도 제외)
	○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2인’	○ ‘자치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 역구수의 2배수로 하되, 인구·행정구 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 하여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다.’
	○ 비례대표 시·도위원의 정수 : 100분의 10	변동 없음
정당의 후보자 추천 (법 제47조)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이상 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 의원선거 -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 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국회 의원지역구(2이상의 자치구·시로 된 경우 자치구·시)마다 1명 이상 을 여성으로 추천 ⇒ ‘군’ 지역은 제외
투표용지의 정당·후보 자 등의 계재순위 (법 제150조)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을 추천하 는 경우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 으로 기호 배정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정당추천 후보자) -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을 추천하 는 경우 해당 정당이 정한 순위(2- 가, 2-나 등)에 따르되, 정당이 정하 지 아니한 경우 선관위에서 추첨하 여 결정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무소속 후보자) -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순으로 기호 배정	○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무소속 후보자) -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으로 결정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관련 정당추천제 및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 의원정수(10%)는 종전대로 동일하게 유지

I. 선거운동 개론(概論)

● (예비)후보자 등록 및 입후보요건 등 관련

구 분	종 전	개 정
예비후보자 등록(법 제60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등록 시기 - 시·도지사선거 : 선거일전 120일 (2010.2.2부터) -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선거 : 선거 기간개시일전 60일(2010.3.2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등록 시기 - 시·도지사선거 : 변동 없음 -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의원선 거, 자치구청장·시장선거 : 선거기 간개시일전 90일(2010.2.19부터) - <u>군의 의원 및 군수 선거</u> : 선거기간 개시일전 60일(2010.3.21부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등록時 제출서류 등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 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등록時 제출서류 등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주민등록초 본, 가족관계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직원 접수증 - (신설) 전과기록 증명서, 학력에 관 한 증명서, 기탁금(법정기탁금의 100분의 20) ※. 기탁금과 전과기록 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을 경우 등록을 수리하지 아니함
후보자 등록 (법 제4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등록기간 - 선거일전 15일부터 2일간 (2010.5.18~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이상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법 제216조) - 선거일전 20일부터 2일간 (2010.5.13~14) 후보자등록

※. 후보자등록기간이 5일 앞당겨져도 선거운동기간은 종전과 같이 5월 20일(목)부터 6월 1일(화)까지 13일간으로 동일함

● 입후보요건 및 공직사퇴 시한

구 분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등의 공직사퇴 시한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 단체장·지방의원 ⇒ 당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선거 : 직을 가지고 입후보 가능 - 단체장·지방의원 ⇒ 다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의회의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전 - 비례대표 지방의회의원선거·보궐선거 : 후보자등록신청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의원 등의 공직사퇴 시한 : 변동 없음 ○ (신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구지방의회의원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하여야 함
<p>공무원 등의 입후보 (법 제53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전 60일까지 사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정무직 공무원 - 선관위원, 교육위원 -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 농협·수협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 -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단,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은 제외) - 정무직 공무원 - 선관위원, 교육위원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의 상근 임원 - 농협·수협 등 조합의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 사립학교 교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시·도 및 구·시·군 조직의 대표자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선거사무소 (법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수 : 1개소 ○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 총 3매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수 : 1개소 ○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 <u>수량 제한 없음</u>
예비후보자 선거사무 관계자 (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6명)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 5명 회계책임자 : 1명 ○ 기초단체장선거(4명)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 3명 회계책임자 : 1명 ○ 지방의회의원선거(3명)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 2명 회계책임자 : 1명 	<p style="text-align: center;">변동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설) <u>장애인 (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추가로 선임</u>
예비후보자 명함(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9cm × 5cm 이내 ○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선관위에 신고된 배우자(또는 직계 존비속중 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9cm × 5cm 이내 ○ <u>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지지호소 도 가능)</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 <u>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 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u> - 배우자와 함께 다니는 수행원 1인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외국인인 경우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공무원인 경우에도 선거운동이 허용됨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p>예비후보자 홍보물(법 제60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수 : 1종 ○ 수 량 : 세대수의 1/10 이내 ○ 규 격 : 27cm × 19cm 이내 ○ 면 수 : 8면 이내 ○ 작성방법(단체장선거만 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2이상 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목표·우선순 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 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 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 불가 	<p>변동 없음</p>
<p>(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공약집(법 제60조의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수 : 1종(도서의 형태로 제작) ○ 규격·면수, 작성수량 : 제한 없음 ○ 배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전 체 면수의 1/10이내로 게재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 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p>변동 없음</p>
<p>전자우편(법 제60조의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법 : 예비후보자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준수 	<p>변동 없음</p>

●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어깨띠· 표지(법 제60조의3)	不 可	○ <u>예비후보자</u>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u>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u> 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
전화선거 운동(법 제60조의3)	不 可	○ <u>예비후보자</u> - <u>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가능</u>
문 자 메시지(법 제60조의3)	不 可	○ <u>예비후보자</u> - <u>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총 5회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u> ※. 보조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고 <u>순전히 휴대폰으로만 보내는 경우</u> 횟수 제한 없음
홈페이지 (법 제59조)	○ 시 기 :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함 ○ 방 법 :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모든 사항 ○ 유의사항 : 학력은 반드시 『정규학력』만 게재	左 同

※. 컴퓨터 등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 기간을 합하여 총 5회 이내임

●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및 제한 관련

구 분	종 전	개 정
선거사무소 (법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수 : 1개소 ○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 총 4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수 : 1개소 ○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 제한 없음
선거사무원 (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 : 구·시·군의 수 + 읍·면·동수 ○ 기초단체장선거 : 읍·면·동수 3배수 이내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10명 이내 ○ 지역구기초의원선거 : 5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 : 구·시·군의 수 + 읍·면·동수 ○ <u>기초단체장선거</u> : 읍·면·동수 3배수 + 5명 이내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 10명 이내 ○ <u>지역구기초의원선거</u> : 8명 이내
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깨띠 착용인원 제한 ○ 소품 : 모자·티셔츠만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어깨띠 착용인원 확대</u> - 후보자 -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중 1인) - <u>모든 선거사무관계자 및 활동보조인</u> ○ <u>소품 확대</u> - <u>윗옷(上衣)·표찰·수기·마스코트</u> - <u>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이 가능</u>
신문광고 (법 제6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 - 광고 색도 및 규격 : 흑색, 가로 37cm × 세로 17cm - 광고계재신고 : 광고계재일 전일까지 서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 - <u>광고 색도 및 규격</u> : 제한 없음 - <u>광고계재신고 의무 폐지</u>
방송광고 (법 제70조)	不 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 - <u>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u> ⇒ 1회 1분 이내

●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및 제한 관련

구 분	종 전	개 정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법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외의 다른 내용 방영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후보자 또는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마크나 심벌 포함)·경력·연설 요지 및 통계자료도 방영 허용
공개장소 연설·대담 (법 제7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원 : 인원수 제한 및 사전 신고 ○ 사회자 : 후보자마다 1명 및 사전 신고 ○ 야간연설 제한(법 제102조) - 공개장소 연설·대담 : 07:00~22:00까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원·사회자 신고제도 폐지 ○ 연설·대담이 가능한 사람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모두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 모두 가능 ○ 야간연설 제한(법 제102조) - 공개장소 연설·대담 : 07:00~22:00까지 가능 - 녹음기·녹화기 : 08:00~21:00까지만 허용
문자메시지 (법 제82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 컴퓨터나 자동송신장치 사용 불가 - 수동적인 방법으로만 전송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시지 전송 방법 - 후보자 : 컴퓨터 등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하여 5회까지 가능(예비후보자 전송 횟수 포함)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휴대폰으로만 전송 가능
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계재 신고 - 광고계재신고 : 광고게시일 전일까지 서면 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계재 신고 - 광고계재신고 의무 삭제
무소속후보자의 정당 표방 제한 (법 제84조)	不 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무소속후보자 지지·지원 또는 공표 허용 -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 선거구의 무소속후보자를 지원하거나, 그 사실의 표방 허용

●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방법 확대 및 제한 관련

구 분	종 전	개 정
행렬 등의 금지 (법 제105조)	○ 거리 행진·연호 등 제한 - 자원봉사자등 : 2인 -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후보자를 포함하여 5인	○ 거리 행진·연호 등 제한 완화 - 자원봉사자등 : 5인 - 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u>후보자를 포함하여 10인</u>
여론조사 사전신고 (법 제108조)	제한 규정 없음	○ <u>여론조사 2일전까지 서면 신고</u> - 신고대상 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신고대상자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 누구든지 ※.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자 - 정당·방송사·신문사·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의정활동 보고 (법 제111조)	○ 의정활동보고 허용 방법 - 집회·의정보고서·인터넷·전화 (자동송신장치 제외) ·축사·인사말 不 可	○ 의정활동보고 허용 방법 - 집회·의정보고서·인터넷·전화 - 축사·인사말 - (신설) <u>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문자 메시지 허용</u> ○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 의정활동보고회, 정책토론회, 출판기념회 그 밖의 각종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차·커피 등 음료(주류 제외) 제공 허용

● 기타 공직선거법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p>선거일후 답례금지 (법 제118조)</p>	<p>명문 규정 없음</p>	<p>○ 당선 또는 낙선사례 현수막 게시 - (신설) 선거일 다음날부터 13일간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만 게시 허용</p>
<p>선거비용의 보전 등(법 제122조의2)</p>	<p>不 可</p>	<p>○ 휴대전화통화료도 보전비용에 포함 -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 락소장,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한 휴대 전화 통화료중 후보자가 부담하는 통화료는 보전</p>
<p>투표의 제한 (법 제156조)</p>	<p>○ 부재자신고 선거인 투표 제한 -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이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음</p>	<p>○ 부재자신고 선거인 투표방법 완화 - 부재자신고를 한 선거인이 부재자투 표를 하지 않은 경우, 부재자투표용 지와 회송용봉투를 선거일에 투표 소에서 반납하고 투표할 수 있음</p>

● 정치자금법 · 정당법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후원회 지정권자 (정자법 제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회 지정권자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시·도지사선거 후보자 - <u>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u>
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광고 (정자법 제1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사항 제한 -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 회원모집 또는 모금을 호소하는 내용 등 ※.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모집 또는 후원금 모금을 위한 홍보사항 완화 - 후원회명, 후원금 모금의 목적, 기부처, 기부방법 - <u>후원회지정권자의 사진·학력·경력·업적·공약과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u> ※. 단, 다른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에 관한 사항은 게재 불가
정당의 간부 (정당법 제12~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간부 - 정당의 등록 및 변경등록 대상이 되는 간부의 범위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간부 - <u>중앙당</u> : <u>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 정책총괄기구의 책임자,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국회에서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u> - 시·도당 : <u>대의기관의 장, 사무기구의 장</u>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 (정당법 제3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 - 중앙당 : 100명 이내 - 시·도당 : 100명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 : 左 同 - <u>근로에 대한 대가를 제공받음이 없이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활동비만을 지급받는 정당의 간부와 단순노무에 따른 일용직 근로자는 유급사무직원의 수에서 제외함</u>

● 정당활동의 자유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정당선거 사무소(법 제61조의2)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선전물 - 수 량 :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4매 이내	○ 정당선거사무소 외벽 선전물 수량 - 수 량 : 간판·현판·현수막 수량 제한 없음
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법 제90조)	○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한 홍보 제한 - 제한기간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전면 금지	○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통한 홍보 제한기간 완화 - 제한기간 : 선거기간중(2010. 5. 20~6. 2)에만 금지
경선여론 조사(법 제108조)	○ 당내경선을 위한 정당 명의의 여론 조사 제한 - 제한기간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	○ 당내경선을 위한 정당 명의의 여론 조사 허용 - 제한기간 : 없음
정강정책 방송연설(법 제137조의2)	○ 방송연설 제한 - 연설하는 모습 외의 다른 내용은 방영 불가	○ 방송연설 완화 - 연설원이 연설하는 모습, 정당명, 마크나 심벌, 연설의 요지 및 통계자료도 방영 가능
정강정책 홍보물(법 제138조)	○ 정강정책홍보물 게재 사항 제한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등 후보자와 관련된 사항은 게재 불가	○ 정강정책홍보물 게재 사항 완화 -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 게재 가능
당원집회(법 제141조)	○ 당원집회의 신고 ⇒ 상시 - 정당이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개최	○ 당원집회의 신고 기간 완화 - 정당이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개최지역을 관할하는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한 후 개최
당사게시 선전물(법 제145조)	○ 선거기간중 당사(중앙당 및 시·도당)게시 선전물 - 게재사항 : 구호, 정당명, 대표자 성명, 정당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수 량 : 간판·현판·현수막을 합하여 4매 이내	○ 선거기간중 당사(중앙당 및 시·도당)게시 선전물 - 정당에 추천한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경력 등 게재 가능 - 수 량 : 제한 없음

● 위법행위에 대한 벌칙 등 개정 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 (법 제2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기준 -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해당하는 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부과 기준 완화 - 기부행위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제공 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u>10배 이상 50배 이하</u>에 해당하는 금액 - 과태료 상한액 : 3천만원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법 제265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무효된 당선인의 비용반환 - 당선인 등의 위법행위로 당선이 무효로 된 자만 보전·반환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반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선무효된 당선인의 비용반환 : 종전과 동일 ○ (신설) <u>당선무효형이 확정된 낙선자</u> : <u>보전·반환받은 선거비용과 기탁금 등을 반환</u>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제한 (법 제2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선거·보궐선거 입후보 금지 - 당선이 무효로 된 자(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선거·보궐선거 입후보 금지 - 당선이 무효로 된 자(기소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자 포함) - <u>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후보자가 되려던 사람 포함)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u> - <u>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직한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사직으로 인한 보궐선거에 입후보가 금지됨</u>

Ⅱ. 단계별 선거준비와 선거운동방법

1. 선거 및 회계사무 주요 일정표

월/일	요일	주요 내용	비 고
1.23까지	토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2.2부터	화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D-120)	공직 사퇴(!)
2.19부터	금	시장·구청장, 도의원, 시·구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D-107)	
3.4까지	목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D-90)	공직사퇴 마감일
3.4부터	목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개최 금지(D-90)	3.3(수)까지 출판기념회·의정보고회 가능
3.21부터	일	군수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개시일(D-73)	
5.13부터 5.14까지	목 금	후보자등록(D-15~14) 각종 신고·신청서류 제출	5. 14(금) 17:00에 기호 확정
5.17까지	목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마감일(D-16)	발송일전 2일까지 발송신고 발송일후 2일까지 영수증 제출
5.21까지	금	선거벽보 제출마감일(D-12)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매세대용 선거공보·접자공보와 동시 제출 가능
5.24까지	월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마감일(D-9) 접자형 선거공보 제출마감일	부재자투표참관인 선임신고 마감일
5.27부터 5.28까지	목 금	부재자투표소 투표(D-6~5)	
5.28까지	금	투표안내문 발송(D-5)	투표용지·선거공보 동봉
5.31까지	월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마감일(D-2)	
6.1까지	화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마감일(D-1)	
6.2	수	투·개표(D-day)	오전 6시~오후 6시
6.12까지	토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제출 마감일(D+10)	선거일후 10일까지
6.22에	목	법정회계마감일(D+20)	단체장선거 후원회 회계마감일
7.2까지	금	선거비용 등의 수입·지출보고서 제출마감일(D+30)	기탁금 반환 및 공제명세서 송부 단체장선거 후원회 회계보고서
8.1까지	일	선거비용 보전 법정기한(D+60)	7. 30까지 선거비용 등 보전

2. 단계별 주요 체크리스트

구 분	후보·캠프	기타 사항
입후보준비기	① 선거준비기획단(T/F) 구성	①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준비
	② 공천서류 준비	② 선거사무소 설치 준비
	③ 예비후보자 등록서류 준비	③ DB 취합 및 정리, 여론조사
	④ 정책공약, 슬로건 등 기획	④ 캠프 관계자 선거법 등 숙지
	⑤ 선거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	⑤ 홍보·기획사 선정 등
예비후보기	① 예비후보자 등록	① 예비후보자공약집(단체장선거)
	② 선거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첩부	② 출판기념회(3.3까지 가능), 개소식
	③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전개	③ 인지·호감도 제고 전략 시행
	④ 예비후보자홍보물 우편 발송	④ 판세분석 등을 위한 여론조사
	⑤ 문자메시지 전송 등	⑤ 연고자 DB 취합 등
경선후보기	① 경선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① 경선인단 여론조사
	② 경선사무소 설치 및 현수막 첩부	② 경선인단 심층 분석
	③ 경선후보자 선거운동 전개	③ 경선인단 대상 차별화된 캠페인
	④ 경선후보자홍보물 제작·제출	④ 경선 시뮬레이션 수립 및 대책
	⑤ 합동토론회·연설회 등	⑤ 우호적인 경선인단 투표율 제고
선거운동기	① 후보자 등록	①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신고
	② 법정 선거운동 전개	② 종합 판세분석 및 대책 수립
	③ 부정선거 감시활동	③ 민주당 후보군 선거운동 공조
	④ 공개장소 연설·대담 활용 극대화	④ 종반 판세분석을 위한 여론조사
	⑤ 우호적인 유권자 전화·문자 홍보	⑤ 지지층 투표율 제고 전략 시행
선거일 후	① 당선사례	① 투·개표 결과 종합 분석
	②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제출	② 선거사무소 해단식
	③ 종합회계보고서 제출	③ 인수위 구성 및 취임식 준비
	④ 후원회 회계보고서 제출(단체장)	④ 하반기 집중 활동계획(안) 수립
	⑤ 선관위 실사에 따른 업무협조	⑤ 선거비용 보전 후 종합 결산

3. 입후보 준비와 활동방법

● 입후보를 위한 준비사항

- ① 선거예산(안) 편성 및 자금 조달계획 수립
- ② 선거준비기획단(T/F) 구성
- ③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 ④ 선거사무관계자 내정 및 선거법 등 교육
- ⑤ 선거구 종합 현황 분석
- ⑥ 선거전략·정책공약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
- ⑦ 당원배가운동 전개
- ⑧ 정치 및 지역 현안 등에 대한 대언론 활동 전개
- ⑨ 홍보·기획사 선정
- ⑩ 출마기자회견

● 입후보준비기 타임테이블(예시)

- ① 출마의 변(당위성, 명분, 비전)을 수립하라
- ② 선거예산(안)과 자금조달계획을 세우고, 선거준비사무소를 설치하라
- ③ 기획사를 선정하고, 홈페이지(블로그)를 개설하라
- ④ 핵심 참모를 구하고, 선거준비 T/F팀을 구성하라
- ⑤ SWOT 분석 및 선거관련 자료와 정보를 취합하라
- ⑥ 선거구에 부합되는 ISSUE를 개발하라
- ⑦ ISSUE-FIGHTING을 통해 이슈를 선점(확산)하라
- ⑧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라
- ⑨ 선거전략 및 정책공약 수립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라
- ⑩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라

● 입후보준비기 활동방법

◇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누구나 부담 없이 찾는 사랑방 => 거점(據點)”

① 선거준비사무소는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음

※. 단, 입후보예정자의 사무소 외부에 입후보예정자의 성명이나 사진 등 홍보사항은 게재 불가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부터는 가능함

② 입후보와 선거운동 준비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함

- 정책·공약을 개발하거나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행위
-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을 위한 교섭행위
- 선거사무장 내정자 등이 선거전략을 수립하고,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임무 등을 부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홍보물 등 선전물의 사전 제작·준비행위

◇ 입후보예정자 명함

① 규격 및 종수 : 제한 없음

※. 단, 예비후보자·후보자 명함은 9×5cm 이내로 제작하여야 함

② 명함을 배부할 수 있는 사람 : 입후보예정자 본인만 배부할 수 있음

③ 명함 게재사항 : 현직은 게재할 수 있으나, 학력·전직 경력은 불가

④ 명함 배부방법

- 사회생활을 하면서 의례적으로 상대방과 인사시에 명함을 수교하는 것은 가능하나, 거리나 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에게 명함을 배부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단,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학력·경력 및 후보자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할 수 있음

◇ 홈페이지 · 블로그

“홈페이지 · 블로그는 또 하나의 선거캠프”

- ① 입후보예정자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 · 블로그에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함
- ② 홈페이지 · 블로그에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사항과 공약 등을 게재할 수 있음
 - ※. 단,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학력은 ‘정규학력’만을 게재하여야 함
- ③ 홈페이지 · 블로그에 ‘연고자추천코너’나 ‘서식’을 게재하여 언제든지 연고자 추천운동을 전개할 수 있음

◇ 전자우편 · 문자메시지

“過猶不及 - 사전선거운동에 유의하시기 바람”

- ① 평소 친교나 지면이 있는 선거구민에게 출판기념회 · 개소식 등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전송하는 행위
- ② 자신의 정보를 받아보기를 원하는 선거구민에게 ‘그 원하는 정보’를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행위
- ③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2010. 3. 3까지 자신의 의정활동 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자동송신방식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을 발송하는 행위
 - ※. 단, 입후보예정자는 자신을 홍보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전송할 수 없으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이후에는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메시지(자동송신 방식은 총 5회 이내)와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음

◇ 출판기념회

“출판기념회 ⇒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금지됨”

- ① 자서전이나 수필집, 예비후보자공약집(단체장·교육감선거) 등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음. 단, 선거일전 90일부터는 금지됨
 - ② 출판기념회 행사장 내방객들에게 도서의 정가를 받고 판매하거나 저자사인회를 개최하는 것도 가능함
 - ③ 2010. 3. 3까지 도서의 판매촉진을 위해 선거구내의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도 가능하나 2010. 3. 4부터는 금지됨
- ※.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인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2010.1.25 개정)

◇ 의정활동보고

“의정보고회 ⇒ 선거일전 90일(2010.3.4)부터 금지됨”

- ①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구민에게 집회,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인터넷, 문자메시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게재하는 경우를 포함)을 통해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음
 - ② 의정보고서 등에는 의정활동이나 직무행위로서의 선거구활동 기타 업적에 관한 내용과 자신의 선거공약 이행실적 등을 게재할 수 있으며, 의정보고서 배부봉투에 보고자인 당해 의원의 성명·주소·소속정당명·사진 등을 게재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선전구호·선거구호는 게재 불가
 - ③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정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함
- ※. 의정보고회에 참석한 사람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1인 1천원 이하의 차·커피 등 음료(주류는 제외)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함(2010.1.25 개정)

◇ 기타 가능한 활동방법

□ 무료민원상담 행위

- ① 정당의 당사 및 국회의원·지방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서 행하는 무료의 민원상담행위
- ② 변호사·법무사·의사·약사·회계사·세무사·공인중개사 등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전문직업인이 업무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무료상담을 하는 행위

□ 정기간행물 등에 기고·인터뷰 등

-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기고문을 게재하거나 인터뷰를 하는 행위

□ 상품광고 출연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일전 90일전까지 상품광고 모델로 출연하여 순수한 상품광고를 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에 회비 납부

- 입후보예정자 등이 각종 사교·친목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에 헌금

- 입후보예정자 등이 평소에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 단,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특별헌금은 제한

4.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모든 역량을 표적집단에 집중하라>

□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본 원칙

- ① 데이터베이스는 전 세대 또는 전체 유권자를 기준으로 작성하라
- ② 가급적 유권자의 모든 상세정보를 기록하라
- ③ 연고자 명부의 경우 추천인 연락처·인적사항 등을 반드시 기록하라
- ④ 취합된 DB는 메인 DB에 기재하되, 관리 및 활용의 편의를 위해 그룹별로 별도 관리하라

□ 데이터베이스는 선거전략의 핵심

- ① 데이터베이스가 없다면 선거전략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 ② 데이터베이스는 선거 전 과정을 계량화할 수 있다
- ③ 유권자수 1/4 이상의 연고자 명부를 반드시 구축하라
- ④ 유의미한 DB가 구축되었다면 10%의 지지율 열세도 역전시킬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준비된 것이다

□ 선거는 과학

- ① 데이터베이스는 유권자 성향별로 특화된 캠페인 구사가 가능하다
- ② 모든 캠페인 방법 중에서 연고홍보가 가장 효과가 크다
- ③ 축적된 DB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

※. 유권자가 10만명인 선거구에 예상투표율이 50%일 경우 투표자수는 5만명이며, 1:1 구도의 경우라도 2만 5천표만 득표하면 당선임. 즉, 10만명에 대한 선거전략이 아니라 2만 5천표를 획득하기 위한 선거전략이 핵심

● 〈참고〉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근소표차 선거구 현황(기초단체장선거)

선거명	1순위(당선)		2순위(낙선)		득표차
	후보자명	득표수	후보자명	득표수	
가평군수선거	무소속	10,813	한나라당	10,437	376
	양재수		조영욱		
연기군수선거	국민중심당	15,794	열린우리당	15,784	10
	이기봉		최준섭		
계룡시장선거	국민중심당	7,744	한나라당	7,375	369
	최홍묵		이기원		
곡성군수선거	무소속	8,096	열린우리당	8,018	78
	조형래		고현석		
군위군수선거	무소속	7,318	한나라당	6,966	352
	박영언		장욱		
청송군수선거	한나라당	9,396	무소속	8,958	438
	윤경희		배대운		
영양군수선거	한나라당	3,827	무소속	3,632	195
	권영택		이희지		
밀양시장선거	열린우리당	23,261	한나라당	23,012	249
	엄용수		박태희		
창녕군수선거	무소속	15,774	한나라당	15,709	65
	김종규		이수영		

5. 여론조사

- 여론조사를 할 때 유의사항

“여론조사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횟수 제한이 없음”

<제한 사항>

- 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편향된 질문을 하는 행위
- ②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③ 사행성 조장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④ 피조사자의 성명·응답결과 등을 공개하는 행위
- ⑤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전행위 ⇒ 여론조사의 범위를 초과하는 전수조사

- 여론조사 사전 신고 ⇒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 실시 2일전까지 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

<신고대상 여론조사>

-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후보자 포함)이나 여론조사기관·단체 등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자>

- ① 정당·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인터넷신문사업자·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 ② 제3자(후보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
⇒ 의뢰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함

● 여론조사 신고 해태 등에 따른 벌칙

구 분	과태료 부과 기준
① 여론조사 실시일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게 여론조사를 한 경우(위법한 조사)	1,000만원 이하
②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미신고)	750만원 이하
③ 여론조사 실시일전 2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지연신고)	500만원 이하
④ 신고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하였으나 여론조사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한 때(변경신고 의무 해태)	250만원 이하

● 여론조사로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예시

- ① 피조사자들의 정치현안에 관한 견해
⇒ 지역의 정책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여론
 - ② 입후보자에 대한 피조사자들의 인식
⇒ 후보군에 대한 인지·호감도, 후보자의 강점·약점 파악
 - ③ 각종 쟁점과 정치현안을 인식하는 방법 및 경로
⇒ 정치쟁점에 관한 인식, 정치 및 투표행위에 대한 정보접촉 경로
 - ④ 피조사자의 특성
⇒ 연령, 성별, 소득수준, 거주 지역, 후보 지지성향, 지지정당, 투표의향 등
- ※.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도 설정을 위한 핵심이슈와 지지정당 파악, 현재 지형평가를 위한 후보 지지도 등임

● 여론조사의 종류

구 분	주요 특징	비 고
벤치마크 여론조사	공약개발용 조사 기법	우편·방문조사 등
추이비교 여론조사	유권자의 동향을 주기적으로 파악	동일 표본, 동일 시간, 동일한 요일 등 동일한 조건으로 실시
전화면접 여론조사	일반적인 사회여론 조사에는 정확도가 높고, 정량조사가 가능 (Open 문항도 조사 가능)	비용이 비싸고, 조사시간이나 결과 분석에 시간이 걸림
표적집단 심층면접조사 (FGI·FGD)	정량조사에 앞서 예비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문제의 파악이나 양적조사에서 검증해야 할 가설 설정을 그 목적으로 함	진행자(모더레이터)의 능력·자질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으며, 조사절차의 비체계성으로 인해 결과의 분석과 해석이 곤란
ARS 여론조사	선거조사에서는 전화면접조사보다 정확도가 오히려 높을 수 있음	조사시간과 결과분석이 신속하고, 비용이 저렴하나 정량조사기법으로 활용하기에는 표본표집 등에 어려움이 있음

※. 그 밖에도 PUSH 조사 등의 기법이 있음

6. 선거기획단 구성 및 업무분장(안)

구 분	주요 업무	비 고
① 전략기획	-업무 및 정무조정, 정보·동향 관리 -T/F팀 각종 회의체계 정례화 및 주관 -선거전략(마스터 플랜) 수립, 정세분석 -전략수립을 위한 FGI·여론조사 기획 -주요 현안 및 이슈 관리 등	
② 정책기획	-정책공약 개발, 메인 및 세부공약 발굴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교통·환경·복지 등 -공약발굴을 위한 인터뷰, FGI 등 -(가칭)주간 e-정책뉴스 발행 -예비후보자공약집 기획 등	
③ 홍보기획	-PI 기획 -이미지 및 홍보 컨셉 -미디어 홍보 및 활용방안 수립 -캐치프레이즈, 메인·서브 슬로건 등	
④ 조직기획	-조직활동 기획 -공·사조직 관리 및 확대 -DB 확보 및 관리 등	
⑤ 메시지기획 공보업무	-대담·토론회 기획 -메시지 기획, 공보·언론 담당 -후보자 체크리스트(위기관리용) 작성 -언론동향 체크 및 대응전략 수립 등	
⑥ 인터넷기획	-인터넷 홍보전략 수립, 콘텐츠 개발 -홈페이지·블로그 제작 및 업데이트 -e-매거진 발간, e-mail 모으기 운동 등	
⑦ 총무행정 법률자문	-각종 선관위 신고·신청서류 준비 -각급 선대위 총무·행정지원, 예산(안) 조정 -정치관계법 자문, 실전매뉴얼 작성 -각종 홍보물 등 법률검토, 선거예산 편성 및 회계관리 -부정선거 법률대응 등	

※. 선거규모 및 실무인력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T/F팀을 구성한 후 점차 인력을 보강하면서 업무를 보다 더 세분화 할 필요가 있음

7. 예비후보자등록과 각종 신고·신청사항

● 일정별 종합체크리스트

구 분	주요 사무 일정	선거사무소 일정(안)
즉 시	-	선거준비 T/F팀 구성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 개설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준비 선거준비사무소 설치 준비
2010.1.23까지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공고	선거비용 예산(안) 편성 어깨띠·표지·명함·홍보물 등 기획
2010.2.2 부터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예비후보자등록 및 선거운동 개시 선거사무소 설치신고 선거사무소 외벽 현수막 설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신고서 제출
2010.2.19 부터	· 정당선거사무소 설치 개시일 · 시·구의 장 및 의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 개시일	
-	정당선거사무소 개소식	선거사무소 개소식
2010.3.4까지	통·리·반의 장 등이 선거사무관계 자가 되고자 하는 때 사직기한	입후보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기한 의정보고회·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2010.3.21 부터	· 군의 장·군의원선거 ⇒ 예비후보자 등록개시일	예비후보자홍보를 발송 신고
2010.4.3까지		선거연락소 설치 준비(단체장선거) 연락소장 내정, 연락소 설치장소 확정
4월중	법정홍보물 등 선거운동용품 준비	후보자등록서류 준비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준비 선거연락소 관련 신고사항 준비
2010.5.13 2010.5.14	· 후보자등록기간(2일간) · 후원회등록	후보자등록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신고 선거연락소 설치 신고 각종 신청·신고서 제출
2010.5.21까지	선거벽보, 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	선거벽보·부재자용 신고공보 제출서
2010.5.24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 제출	선거공보 제출서, 공약서 배부신고
2010.6.12 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제출마감	사무소·연락소 선거비용 보전청구서
2010.7.2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회계보고	후원회 회계보고(단체장선거)

● 일정별 각종 신고·신청 사항

구 분	주요 사무 일정	신고·신청 사항
-	<p style="text-align: center;"><중앙당 및 시·도당></p> <p style="text-align: center;">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설치 공천심사위원회 설치</p>	<p><공천심사위원회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보자추천신청서 ② 서약서 ③ 의정활동계획서, 매니페스토 실천계획서 ④ 당원추천서 또는 입당신청서 ⑤ 주민등록등본 ⑥ 당적증명서 ⑦ 당비납부 확인서 ⑧ 개인별 기록카드 ⑨ 본인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⑩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⑪ 최종학력증명서 ⑫ 병적증명서 ⑬ 재산신고서 ⑭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⑮ 범죄경력조회서 ⑯ 갈라 명함판 사진(5×7cm) 4매 ⑰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2부터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p>	<p><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사직원 접수증(해당되는 자) ④ 주민등록표 초본 ⑤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⑥ 정규학력 증명에 관한 증명서 ⑦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⑧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증명서 (교육감선거) ⑨ 비당원 확인서(교육감선거) ⑩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⑪ 이력서 ⑫ 반명함판 사진(5×7cm) ⑬ 법정기탁금의 20%

구 분	주요 사무 일정	신고·신청 사항
2. 2부터	선거사무소 설치신고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신고	<기타 제출서류> ①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② 선거사무관계자(배우자 등) 선임신고서 ③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④ 표지 교부신청서 : 표지를 분실한 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제출서류> 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③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 ④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사본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판매전까지 제출>	<단체장선거> ①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출서 ② 예비후보자공약집 2부 <div style="background-color: black; color: white; text-align: center; padding: 5px;">출판기념회 개최 (D-91일까지)</div>
2. 2부터 5. 17까지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 <발송일전 2일까지 신고>	①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② 예비후보자홍보물 2부
	우편요금 영수증 사본 제출	발송일로부터 2일 이내
2. 19부터	시·구의 장 및 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 -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 -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신고서
3. 21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군의 장 및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신고서 - 예비후보자공약집 배부신고서(단체장선거)

구 분	주요 사무 일정	신고·신청 사항
<p>5. 13부터 5. 14까지</p>	<p style="text-align: center;">후보자 등록</p> <p>※. <u>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u></p>	<p><후보자등록시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당의 후보자 추천서 ② 후보자등록신청서 ③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④ 사직원 접수증(해당되는 자) ⑤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⑥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⑦ 세금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⑧ 전과기록증명서류 ⑨ 최종학력 증명에 관한 제출서 ⑩ 후보자 인영신고서 ⑪ 경력방송원고 제출서 각 2부 ⑫ 후보자 이력서 ⑬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⑭ 후보자 사진(5×7cm) ⑮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법정기탁금 80%) <p><기타 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②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선임신고서 ③ 선거사무장 인영신고서 ④ 선거연락소 설치신고서 ⑤ 선거연락소장 선임신고서 ⑥ 선전물 첨부차량 등 ‘표지’ 교부신청서 ⑦ 신문광고 게재 인증서 교부 신청서 ⑧ 선거공약서 배부신고서, 공개 승낙서 ⑨ 후보자의 방송연설신고서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신청·신고 사항 <선거사무소></p>	

구 분	주요 사무 일정	신고·신청 사항
후보자등록 직후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회 등록</p> <p>※. <u>시·도지사선거, 기초단체 장선거 후보자만 해당됨</u></p>	<p><후원회 등록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후원회 등록신청서 ② 정관 또는 규약 ③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④ 후원회 및 대표자의 인영서 ⑤ 후원회 지정서 ⑥ 후원회 결성회의록 사본 ⑦ 후보자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⑧ 후원회 사무소 소재지 약도
	<p style="text-align: center;">후원회 회계책임자 선임신고</p>	<p><제출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회계책임자 선임신고서 ②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③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사본
<p>5. 20까지 5. 20부터</p>	<p>선거운동개시일 (D-13)</p>	<p>구·시·군의 장에게 선거인명부 사본교부신청 마감일</p>
5. 21 까지	<p>선거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마감일</p>	<p>선거벽보·부재자용 선거공보 제출서</p>
	<p>부재자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마감일</p>	<p>부재자투표참관인 선임신고서</p>

구 분	주요 사무 일정	신고·신청 사항
5. 24 까지	매세대용 선거공보(점자공보) 제출마감일	선거공보 제출서
5. 31까지	투표참관인 선정신고 마감일	투표참관인 선임신고서
6. 1까지	개표참관인 선정신고 마감일	개표참관인 선임신고서
6. 12 까지	선거비용보전청구서 제출마감일	① 선거사무소 보전청구서 제출 ② 선거연락소 보전청구서 제출
6. 22에	법정회계마감일	선거회계 및 후원회 회계 마감일
7. 2까지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제출마감일	① 선거사무소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② 선거연락소 수입·지출보고서 제출
	후원회 회계보고 마감일	<제출서류> ①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 ② 후원회의 재산명세서 ③ 후원회의 수입·지출 총괄표 ④ 과목별 정치자금 수입·지출부 ⑤ 영수증 등 증빙서류 ⑥ 비공개·공개대상 기부자명단 ⑦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사본 ⑧ 자체 감사기관 감사의견서 ⑨ 대의기관의 심사의결서

● 예비후보자 등록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

-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자 및 개소식·현판식·간판게시식에 참석한 자에게 1인 3,000원 이하의 다과류(김밥·제과·떡·과일 등)와 1천 원 이하의 음료를 제공하는 행위
 - ◇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자에게 1인 10,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주류 제외)
 - 시·도지사선거·교육감선거 : 15인 이내
 - 기초단체장선거 : 10인 이내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5인 이내
- ※ 예비후보자·배우자와 예비후보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그 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가. 등록 시기

구 분	등록 시기	비 고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선거일전 120일부터 : 2010. 2. 2(화)부터	D-120
자치구·시의 장 및 구·시의회의원선거 시·도의회의원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90일부터 : 2010. 2. 19(금)부터	D-103
자치군의 장 및 군의회의원선거	- 선거기간개시일전 60일부터 : 2010. 3. 21(일)부터	D-73

나. 등록시간 :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후보자등록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준수해야 함

다. 등록기관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라. 등록신청 서류

-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의(나)
- (2) 주민등록 초본 또는 국내 거소신고 사실 증명서
- (3) 가족관계증명서
- (4) 재직증명서(「공직선거법」 제6조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한함)
- (5)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공무원 등의 신분을 가진 자에 한함]
- (6)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 (7)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및 정규학력 증명서
- (8) 교육경력 및 교육행정경력증명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 (9) 비당원 확인서(교육감·교육의원선거에 한함)
- (10) 예비후보자 인영신고서
- (11)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 (12) 이력서
- (13) 사진 5×7cm
- (14) 기탁금 입금표(이체 확인증) : 법정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는 후보자등록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만,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까지 추가하거나 보완하여야 함(법 제49조⑤)

● 선거사무소 설치신고

가. 신고자 : 예비후보자

나.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다. 신고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라. 신고서식 : 선거사무소 설치신고서[별지 제16호서식의(가)]

마. 설치장소 : 당해 입후보하고자 하는 선거구안

바.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

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목욕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등

사. 선거사무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설치 : 수량 제한 없음

※ 예비후보자가 그 신분을 상실한 때에는 선거사무소를 폐쇄하여야 함

※ 후보자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는 후보자의 선거사무소로 봄

<선거사무소 개소식>

<주1> 선거사무소 개소식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개최시기를 전략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람

<주2> 개소식에는 ‘평소 친교나 안면이 있는’ 지인과 당원,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입후보 예정자,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 내정자, 후원회 회원, 언론사 기자 등 선거사무소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문자메시지·전화 등으로 고지할 수 있음

<주3> 개소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1인 3천원 이하의 다과류와 1천원 이하의 음료(주류 제외)를 제공할 수 있음

●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신고

가.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

(1) 인 원 수

구 분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배우자·직계존비속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1인	4인	- 배우자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
기초단체장선거	1인	2인	
지방의회의원선거	1인	1인	

※ 회계책임자는 위 인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활동보조인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는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범위]

<주1>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모든 등급의 사람
- 그 밖의 장애인 :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사람

<주2> 장애인 예비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려는 경우에는 선임신고시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가 발행한 장애인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공무원 또는 외국인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더라도 선거운동이 허용됨(2010.1.25. 개정)

나. 선거사무관계자 선임시 유의사항

- (1)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봄
- (2)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음(법 제205조 제2항)

- (3) 교체선임 할 수 있는 선거사무원수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법정선거사무원수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음

다. 선거사무관계자 등 선임신고

- (1) 신고자 : 예비후보자(선거사무원은 선거사무장이 신고 가능)
- (2) 신고시기 : 선임·해임 또는 교체시 지체 없이
- (3) 신고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4) 신고서식 : 별지 제16호서식의(나)

※ 선거운동용 인쇄물·시설물·광고물, 정당의 기관지·정책홍보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자
원봉사자 모집 가능

라. 유의 사항

- (1) 활동보조인을 두고자 하는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규칙 제27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증명서류 또는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표지'를 교부함

- (2) '표지'를 분실 하여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분실한 자와 그 선임권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 '표지' 재교부신청서[별지 제16호서식의(라)]를 관할선거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가. 회계책임자 선임

- (1) 인원수 : 예비후보자마다 1인
- (2) 자격요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 (1) 신고시기 :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
- (2) 신고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 (3) 신고서식 :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4) 첨부서류
 - 회계책임자 취임동의서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통장 사본
 - ※ 예금계좌는 다른 목적의 예금계좌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 예금계좌는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와 지출용 예금계좌를 구분하여 신고(수입·지출 겸용사용 가능)하되,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나,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반드시 1개만 사용하여야 함
 -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에 한함)

[참고] 선거사무관계자 법정 수당·실비 등 지급기준
(법 제135조, 규칙 제59조)

(단위 : 원)

구 분	직 위	수 당	실 비							
			일 비 (1일당)	숙박료 (10야당)	식 비 (1일당)	철 도 운 입	선 박 운 입	항공 운 입	지동차 운 입	
시·도 지사선거	선 거 사무소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7만원 이 내	20,000	미지급	25,000	1등급	1등 정액	정액	정액
	교육감 선 거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5만원 이 내	20,000	미지급	20,000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기 초 단체장 선 거	선 거 사무소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5만원 이 내	20,000	미지급	20,000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선 거 연락소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5만원 이 내	20,000	미지급	20,000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5만원 이 내	20,000	미지급	20,000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공 통	선거사무원	3만원 이 내	20,000	미지급	20,000	2등급	2등 정액	정액	정액	

※ 회계책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는 당해 선거사무소의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에 대한 수당·실비와 같은 금액으로 지급함

8.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구 분	세부 사항
선거사무소 (법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수 : 1개소 ○ 간판·현판·현수막 첩부 : 수량 제한 없음(개정)
선거사무관계자 (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 각 1인 ○ 선거사무원 : 광역단체장(4명), 기초단체장(2명), 지방의원(1명)
예비후보자 명함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9cm × 5cm 이내 ○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자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배우자와 수행원 1인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관계자
예비후보자 홍보물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수 : 1종 ○ 수 량 : 세대수의 1/10이내 ○ 규 격 : 27cm × 19cm 이내 ○ 면 수 : 8면 이내 ○ 작성방법(단체장선거) : 지방의원후보는 8면 모두 홍보사항 게재가능 <p>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2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 불가</p>
예비후보자 공약집 (법 제60조의4) <u>*단체장선거만 해당*</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수 : 1종 (도서의 형태로 제작) ○ 규격 및 면수, 작성수량 : 제한 없음 ○ 작성방법 예비후보자자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전체 면수의 1/10 이내로 게재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전화·문자메시지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 : 전화를 이용한 지지·호소 가능 ○ 문자메시지 : 자동송신방법으로 총 5회 이내(법정선거운동기간 포함)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경우 횟수 제한 없음
어깨띠·표지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 : ‘어깨띠’나 ‘표지’를 부착하고 선거운동 가능
전자우편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법 : 예비후보자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준수
홈페이지·블로그 (법 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 :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블로그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함 ○ 방 법 : 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유의사항 : 학력은 반드시 『정규학력』만 게재하여야 함

9. 기간별 제한 · 금지사항

기 간	제한 · 금지사항
언제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등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85)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①1·2·3) ·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 등 광고 출연금지(§86⑦) · 단체의 선거운동금지(§87①) · 사조직 등의 설립·설치금지(§87②) · 유사기관의 설치금지(§89①) · 확장장치와 자동차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제한(§91) · 선거운동을 권유 또는 약속하기 위한 신분증명서 기타 유인물 배부금지(§93③) · 신문·잡지등의 통상방법외의 방법에 의한 배부금지(§95) · 허위논평·보도금지(§96) · 방송·신문의 불법이용금지(§97) · 방송이용 선거운동 제한(§98) · 선거운동을 위한 행렬등 금지(§105) ·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 ·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날인 금지(§107) · 공표 또는 보도목적 여론조사시 의무·제한 등(§108④) · 후보자등의 비방금지(§110, §251) · 기부행위 상시제한(§113~116) · 기부받는 행위등의 금지(§117) · 허위사실 공표금지(§250)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2009.12.4 ~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배부 금지(§86⑤) ·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근무시간중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 참석금지(§86⑥) · 정당·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단체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9②) · 시설물설치등의 금지(§90①)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93①)

기 간	제한 · 금지사항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3.4~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 · 후보자명의를 광고금지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금지(§93②)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금지(§103⑤) · 의정활동보고 금지(§111)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2010.4.3~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표용지 유사모형이용 또는 정당 · 후보자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금지(§108②)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86②)
선거기간중 (2010.5.20~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86①5~7) ·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용 시설물 설치·게시행위금지 (§90②) · 영화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2) · 방송 · 신문등에 의한 광고금지(§94) · 구내방송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99) · 녹음기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100) · 시국강연회등 연설회 개최금지(§101) · 야간연설회등의 개최제한(§102) · 각종 집회등의 개최제한(§103②~④) · 입당권유, 공개장소연설 · 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106 ①,③) · 서신 · 전보등에 의한 선거운동 금지(§109) · 정강 · 정책의 신문광고등 금지(§137) · 정당기관지의 발행 · 배부제한(§139) · 당원모집 및 입당원서 배부 제한(§144) · 당사게시 선전물등의 제한(§145)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2010.5.27~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의 공표 · 인용보도금지(§108①)
선거일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답례를 위한 금품제공등 현수막게시금지(§118)

Ⅲ. 후보자등록 및 법정선거운동 방법

1. 후보자 등록

가. 등 록 처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나. 등록기간 : 2010. 5. 13(목)~5. 14(금), 2일간

다. 접수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위 접수시간은 법정시간이므로 반드시 지켜야 함

※ 가급적 후보자등록개시일(5. 18) 09:00에 등록하시기 바람. 언론사가 후보자등록상황을 취재·보도할 것이므로 사전에 해당 언론사에 등록시간을 통지하여 취재 및 보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하시기 바람

라. 접수순서

- (1) 접수장소에 도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순서에 의함. 다만 동시에 도착한 자나 09:00전에 대기하고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2) 추첨방법은 1차로 추첨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하고, 2차로 추첨 순위에 의해 접수순위를 정하기 위한 추첨을 실시함

마. 등록신청서류 목록

- (1) 후보자등록신청서 : 별지 제12호서식의(나)

< 덧붙임 서류 >

- ①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또는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 ② 가족관계증명서(외손자중 병역사항신고대상자가 있는 때에는 그 외손자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③ 사직원 접수증 또는 해임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해당되는 자)
- ④ 주민등록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⑤ 재직증명서(법 제1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
- ⑥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 ⑦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 ⑧ 최근 5년간의 후보자, 배우자와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 ⑨ 전과기록 증명에 관한 제출서
- ⑩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제출서
- ⑪ 인영신고서
- ⑫ 후보자 이력서
- ⑬ 선거사무소 약도 및 전화번호
- ⑭ 후보자 사진(5×7cm 천연색 탈모상반신)
- ⑮ 기탁금 무통장 입금표

(2) 경력방송원고제출서 : TV·라디오 각 2부

(3) 정당의 당인 및 대표자인장의 인영신고서

※ 기등록 된 인영으로 같음할 수 있음

■ 기탁금(법 제56조)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 의원선거
기탁금	5천만원	1천만원	300만원	200만원

※ 예비후보자가 해당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납부

-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기탁금의 예치를 위하여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후보자 명의' 로 계좌입금하고 당해 금융기관이 발행한 입금표 사본을 제출
-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포함)으로 납부 가능

2. 법정선거운동방법과 준비사항

가. 선거운동기구 및 선전물 첨부 (법 제61조, 제67조)

구 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단체장·교육감선거)
사무소 수	1개소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수량 제한 없음	수량 제한 없음
읍·면·동 현수막	읍·면·동마다 1매	읍·면·동마다 1매

※. 외벽 현수막은 규격제한 없으나, 읍·면·동 현수막은 각 10㎡ 이내

나. 선거사무소 등 외벽 선전물 첨부 수량 (규칙 제27조)

구 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각 50매	각 30매
기초단체장선거	각 30매	각 20매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각 20매	-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각 20매	-

※. 선거사무소 등 외벽에 첨부할 수 있는 선전물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단체장선거만 해당)·후보자 사진(선거벽보 규격의 2배 이내)

다. 유급 선거사무관계자 선임 (법 제62조)

구 분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사무장	1명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마다 1명
	회계책임자	1명	선거연락소마다 1명
	선거사무원	구·시·군의 수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수 (그 수가 10인 미만인 때는 10인)	읍·면·동수 이내
기초단체장 선거	선거사무장	1명	-
	선거연락소장	-	선거연락소마다 1명
	회계책임자	1명	선거연락소마다 1명
	선거사무원	읍·면·동수의 3배수 + 5인	
지역구 광역의원선거	선거사무장	1명	-
	회계책임자	1명	-
	선거사무원	10명	-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선거사무장	1명	-
	회계책임자	1명	-
	선거사무원	8명	-

※. 사회자와 연설원 신고제는 폐지되었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연설·대답이 가능함(2010.1.25. 개정)

라. 법정홍보물 (법 제64 ~ 제66조)

구 분		규 격	수 량	면 수	배부주체
선거벽보		53cm×38cm	관할선관위가 공고하는 수량	1면	선관위
선거공보	일반형	27cm×19cm		8~12면	선관위
	점자형	27cm×19cm		8~12면	선관위
선거공약서 (단체장선거)	일반형	27cm×19cm	세대수의 1/10이내	12~16면	후보자
	점자형	27cm×19cm		12~16면	후보자

※.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 및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마. 어깨띠 · 상의(上衣) 등 (법 제68조, 제105조②)

구 분	착용이 가능한 사람
어깨띠	- 후보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중 1인
상의(上衣) · 표찰 수기 · 마스크트	-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 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상의(上衣)는 3만원 이내, 표찰 · 수기 · 마스크트는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바. 신문광고 (법 제69조)

구 분	규격·색도	기 간	횟 수	주 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제한 없음	5.20~5.31	5회 (인구 300만을 넘는 시·도의 경우 300만을 넘는 매 100만마다 1회 추가)	후보자

사. 방송광고 (법 제70조)

구 분	제한사항	기 간	횟 수	주 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회 1분 이내	5.20~6.1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후보자

아. 방송연설 (법 제71조)

구 분	제한사항	기 간	횟 수	주 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1회 1분 이내	5.20~6.1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5회 이내	후보자
기초단체장 선거	1회 1분 이내	5.20~6.1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내	후보자

※. 후보자가 연설하는 모습, 후보자의 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연설요지 및 통계자료도 방영이 가능함 (2010.1.25. 개정)

자. 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

구 분	제한사항	기 간	횟 수	주 체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기초단체장선거 지방의원선거	제한 없음	5.20~6.1	제한 없음	후보자

차. 공개장소 연설·대담 (법 제79조)

구 분	차 량	확성장치	녹화기 규격	연설·대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용	1대	부착용 : 1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나 연설·대담 가능
	연락소용	1대	휴대용 : 1조	
기초단체장선거 후보자용	1대	부착용 : 1조	5m ²	
지방의원선거 후보자용	1대	휴대용 : 1조	3m ²	

※. 연설·대담을 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후보자가 지정한 사람은 누구든지 연설·대담이 가능함 (2010.1.25. 개정)

카. 대담·토론회 (법 제81~82조, 제82조의2, 제261조 제2항)

대담·토론회 주체	기 간	횟 수	비용부담	대담·토론자
단 체	5.20~6.1	제한없음	해당 단체	후보자(대리인)
언론기관 (인터넷언론사 포함)	4.3~5.19	제한없음	언론기관	입후보예정자
	5.20~6.1	제한없음	언론기관	후보자(대리인)
선거방송토론위원회 (단체장·교육감선거)	5.20~6.1	1회 이상	선 관 위	후 보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2010.1.25. 신설)

타. 문자메시지 (법 제82조의4)

구 분	전송 횟수
컴퓨터 등 자동송신	- 총 5회 이내 ⇒ 예비후보자 기간 발송횟수 포함
휴대폰으로 전송	- 횟수 제한 없음

파. 전화홍보 (법 제82조의5)

구 분	방 법
후 보 자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에 설치된 전화 - 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회계책임자가 선거운동기간중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한 휴대전화요금도 보전대상에 포함됨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	- 자신의 휴대전화나 자택·사무소 등에 기설치 된 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가능

3.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 비교표

구 분	예비후보자(2.2 ~ 5.19까지)	후 보 자(5.20 ~ 6.1)
선거사무소	- 1개소	- 1개소
선거연락소	-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기초단체장선거
법정홍보물	- 예비후보자 명함 - 예비후보자 홍보물(8p) - 예비후보자공약집(단체장선거)	- 후보자 명함 - 선거벽보 - 선거공보·점자공보 - 선거공약서·점자공약서 (단체장선거)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장 - 회계책임자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장 - 선거연락소장(단체장선거) - 회계책임자 - 선거사무원
전자우편	- 허 용	- 허 용
홈페이지(블로그)	- 상시 허용	- 상시 허용
간판·현판·현수막	- 사무소 외벽에 첩부 (수량 제한 없음)	- 사무소 외벽(수량 제한 없음) - 연락소 외벽(수량 제한 없음) - 읍·면·동에 각 1대
어깨띠·표지 등 소품	- 예비후보자만 착용 가능	- 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 - 선거사무관계자 모두 착용 가능
신문광고	-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방송광고	-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방송연설	-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기초단체장선거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	- 후보자용 1대 - 선거연락소마다 1대 - 로고송·영상홍보물 등
선거방송토론회	-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 기초단체장선거
인터넷 광고	-	- 횟수 제한 없음
전화선거운동	- 예비후보자만 가능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음성메시지	-	- 선거운동기간중 가능
문자메시지	- 자동송신장치를 이용한 문자 전송 : 총 5회 이내 -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경우 : 횟수 제한 없음	

IV. 매니페스토 작성 및 활용 예시

[민주정책연구원]

- 2010 지방선거 승리의 길 -

'감동과 과학의 Manifesto' 작성 메뉴얼

I. 매니페스토의 필요성과 법적 근거

1. 매니페스토의 필요성

○ 과학과 감동의 매니페스토 선거

- 1997년 영국 노동당의 토니 블레어는 새로운 노동당(New Labour)의 비전으로 10대 정책을 들고 나와 20년 집권의 보수당으로부터 정권 탈환 성공
- 일본은 2003년 도입, 2007년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돌풍의 원동력
- 우리 민주당은 2008년 총선에서 매니페스토 정책자료집 <국민과의 약속>을 제시하여 한국 정당사상 최초로 매니페스토 교육과 실천을 주도하였음

○ 왜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제시해야 하는가?

- 가장 먼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실행한 민주당은 국민들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언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합하여 매니페스토 선거운동을 전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매니페스토 선거를 주도해나가야 할 것임

2. 법적 근거

- 공직선거법은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60조 3항, 제60조 4항, 제66조, 제108조 2항 등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구 분	시·도지사 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시·도의원선거	구·시·군의원 선거	
선거운동기간	13일	13일	13일	13일	
예비후보자 홍보물	8면 이내	8면 이내	8면 이내	8면 이내	
예비후보자 공약집	* 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는 공약집(도서)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 가능함(단, 방문판매는 금지)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할 수 없음				
책 자 형 선거공보	면 수	12면 이내	12면 이내	8면 이내	8면 이내
	제출마감	2010. 5. 24, 18:00까지 (부재자용은 5. 21, 18:00까지 제출마감)			
	특이사항	* 책자형 선거공보의 원고는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자기디스크나 인터넷에 입력하고, 선관위는 이를 1책으로 작성하여 발송할 수 있음			
선 거 공약서	면 수	16면 이내	12면 이내	-	-
	수 량	세대수의 10분의1 이내		-	-
	특이사항	*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 당선인의 선거공약서를 임기만료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음			

II. 매니페스토 작성 : 기본원칙과 작성요령 및 작성 포인트

1. 원칙과 관점

가. 우선적으로는 지역의 정책수요와 선호도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사전 조사에 기초하되,

나. 공개적, 민주적, 상향식 작성을 원칙으로 해야 함

- 매니페스토는 정당과 정치인의 상품을 유권자가 소비하는 공적 약속인 만큼 지역 밀착형이자 생활밀착형 공약을 개발·생산하여 제시

다. 매니페스토의 승패는 작성과정의 진정성과 노력에 달려 있음

2. 작성 요령

가. 후보자, 정치인이 기본적인 작성/총괄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핵심이며,

나. “실무자형”, “관료형”, “사무국형”의 작성주체 형성은 필패의 지름길임

- 관료나 실무자는 정보와 자료를 준비, 제공하는 역할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거칠고 투박하더라도 “책임성”, “현장성”, “창의성”이 있는 후보자인 현장 정치인이 리드하고 책임지는 것이 필요

3. 작성 포인트

가. 비전과 가치는 간단, 명료하게 제시

나. 상징정책, 간판정책(key-policy) 선택의 중요성

- 정치적으로 부각될 수 있고
- 민주당 정체성과 가치, 그리고 후보자의 이미지에 조응하고 전략과 부합하며
- 사회의 일반적 가치나 다른 정책이슈와 부합하며
- 경제성과 실현가능성이 높은 정책을 선정해야 하고
- 상징내지 간판정책은 유권자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브랜드 정책공약을 최대한으로 세 가지 이내를 선정하여 제시해야(A 후보 + B 공약)

다. 핵심정책은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 당선 후 100일 또는 1년내 처리할 정책
- 당선 후 2년내 처리할 정책
- 4년 임기 동안내 처리할 정책
- 임기 이후의 중장기 정책과 계획 등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작성

라. 재원·기한·로드맵 제시는 핵심정책의 경우 반드시 기입해야 하지만, 공개의 시기·수위 등은 선거에서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됨

- 세부정책 또한 'case by case'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III. 매니페스토 작성 프로세스 및 구체적인 사례

1. 매니페스토 작성 프로세스

- 가. 매니페스토 작성계획 수립부터 지역 유권자의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 나. 이를 토대로 지역사회의 정책수요 및 선호도에 대한 조사를 시행한 후
- 다. 지역사회 및 후보자의 비전과 가치에 기초한 상징정책·간판정책, 그리고 핵심정책 과제를 선정하여 최종적 매니페스토화 하는 프로세스로 진행

2. 매니페스토의 구성요건 및 실제 사례

가. 시·도지사의 경우

(1) 총론적 정책공약자료집의 기본 구성요건

I. 총론	후보자가 생각하는 광역사회의 비전과 가치
	단기 및 중장기 추진전략
	4년간의 예산 총계표
	4년간의 공약 추진 일정표
II. 정책분야별 공약	정책목표(성과지표를 분명히 제시)
	정책 추진일정
	예산계획 등 정책실현 수단 분명히 제시



(2) 구체적인 개별 정책공약 작성사례 : 2008년 총선시 우리 당 브랜드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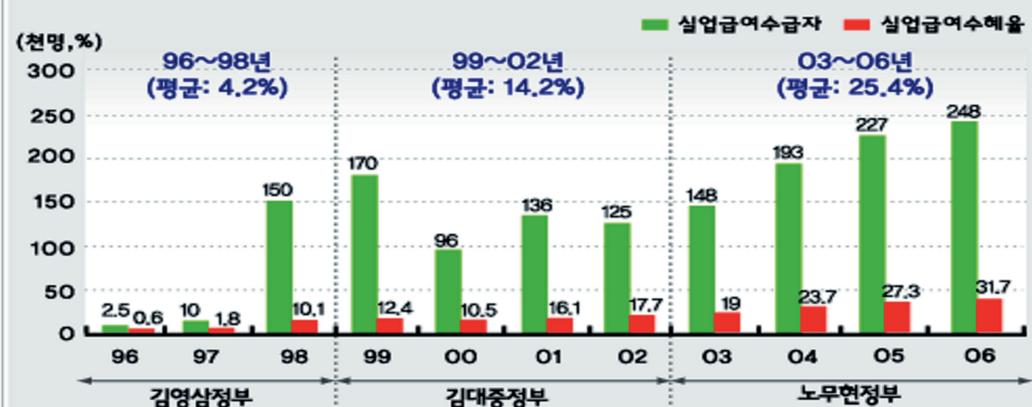
- 다음의 사례는 2008년 총선 당시 중앙당 차원의 브랜드정책의 매니페스토 사례로서, 시·도지사선거 출마자의 경우 그 형식 및 내용의 틀을 참조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에게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모든 재취업 희망자에게 직업훈련과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습니다.

1 현 황

- 이명박정부는 ‘연 60만개,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공약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염불이 될 가능성
- 사회안전망을 ‘사회적 비용의 급증’, ‘도덕적 해이’ 등으로 인식하고 이를 축소할 가능성에 우려
- 일자리 문제, 특히 청년실업문제에 대한 논란 지속
 - 현재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7% 수준 (전체 실업률은 3.2%)
 - 내실있는 일자리 대책의 지속과 함께 청년 취업 지원 대책, 특히 미스매치 완화와 고용지원서비스의 개선이 시급
- 취약근로계층의 핵심인 ‘실업자=재취업 구직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 미흡
 - 전체 실직자의 35%만 실업급여=재취업지원급여 수급, 노동시장의 유연안정화를 가로막는 핵심 사유의 하나임
 -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자발적 실직자 등을 수급 자격 제외하고 있는 상황

실업급여 수혜율



자료) 노동부

2

정책목표

- 대한민국의 실정(2만불 소득, 세계 11위 경제국가, 지식기반경제 등)에 맞는 청년 일자리 대책 추진
 - '토목공사 형' 일자리 정책과 대별
 - 전체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내실화로 '고용있는 성장 정책'을 이끌 필요
 - 문화, 생활체육,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등 사회서비스산업 육성
 - 사회적 기업 육성 : 2012년까지 2,000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 육성
- 청년 취업 지원 프로그램 내실화
 - 청년에 대한 1:1 취업상담, 능력개발, 취업안내 등 종합 프로그램 시행
 - 참여정부 기간 시범실시를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YES(Youth Employee System) 프로그램을 전체 고용지원센터에서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
- 실직자의 실업급여 수혜율 지속 개선
 - 주요 타겟그룹은 비정규직 등 취업 유동성이 큰 부분과 자발적 실직자
 - 직장이동을 위해 퇴사한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본의의 선택을 존중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및 실업급여에 준하는 재취업지원급여 보장

3

추진계획

공약
내용

- 청년들의 취업 지원 역량을 배가해서 취업 소요기간을 1/2로 단축
 - 청년층 대상 YES(청년취업지원) 프로그램의 전국적, 전면적 시행
 - 대학, 실업계고교 취업지원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 고졸이하 청년층 대상 '취업연계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 직업훈련 강화
 - 2012년까지 직업훈련 수혜율을 40%까지 개선('07년 현재 13.5%)
- 고용보험 수혜율 2012년 60%까지 개선
 - 자발적 실직자에 대해 맞춤형 직업훈련 및 실업급여 수급 보장

프로세스
및
달성기한

-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지속 개선
- 정부-국회 간 합동 '일자리 대책 위원회' 운영

입 법
조 치

- 고용보험법 개정 등을 통해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기초 강화

4

예산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예산추계

- 대학취업 지원사업 확대
 - 연 300억원 추가 소요(07년 집행 예산 250억에 추가 금액만 환산)
- YES 프로그램 확대 시행 : 연 80억 원 추가 소요
- 고용보험 수급률 및 직업훈련 수혜률 개선 소요 비용 :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
 - 구체적인 소요 금액은 실업률, 일자리 창출 역량 등에 연동됨

재 원
조 달
방 안

- 고용보험기금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대책'에 적극 출연
 - 보험가입자 확대 등으로 부족 재원 충당 가능

5

기대효과

- 청년실업의 약화 및 취업소요기간 단축, 고용지원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 실직자 대상의 사회 안전망 강화, 사회복지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 실현
- 사람의 능력을 높이고, 재도전 의욕을 북돋아, 사회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고, 혁신 역량을 강화 가능
- 복지국가, 사회투자국가의 토대 구현

나.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의 경우

(1) 구체적인 개별정책 작성사례 ①

초·중·고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현하겠습니다

현 안

- 2009년에 처음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김상곤 교육감은 경기도 전체 초등학교에 무상급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편성 권한을 가진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예산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인근 과천시 같은 안양과천교육청 관할이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 무료급식은 정부살림이 부족하더라도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입니다. 교육청 예산으로 안 된다면 안양시 예산으로라도 저희 아이들이 ‘밥걱정’을 하지 않게 만들겠습니다. 초등학교뿐 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와 같은 비제도권 교육영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안양시 모든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지키겠습니다.

공약목표

- 무상급식의 단계별 확대 실시

목표달성방법

- 초·중·고등학교 등 제도권 교육영역의 단계별 무상급식 확대 실시
- 제도권 교육기관에서 비제도권(대안학교) 교육기관으로 확대 실시

재원조달

	(단위 : 백만원)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4년차 이후
초등학교		시비:3,000	시비:3,000	시비:3,000	시비:3,000
중학교				시비:2,000	시비:2,000
고등학교					시비:2,000
비제도권학교					시비:200

* 교육청 예산 확보시 비예산사업으로 전환

(2) 구체적인 개별정책 작성사례 ② : 일본 민주당 정책사례(2009년 선거)¹⁾

- 2009년 일본 총선에서 일본 민주당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정책공약을 발표하였는데, 그 사례로 <출산·보육·아동정책>의 일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음

출산·육아에 필요한 경제적·정신적 부담의 경감

자녀를 둔 모든 보호자가 여유와 책임을 가지고 육아가 가능하도록 사회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동 수당과 출산 장려금, 육아휴직급여의 충실 등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는 과정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을 종합적으로 충실하게 하겠습니다.

남녀가 함께 가족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건강하게 일하며 자기계발과 지역 활동도 할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의 균형 확보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양한 일하는 방식에 따른 보육 수요에 대한 대응과 학동보육 대기아동 해소를 추진하고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보건소와 아동관 등의 육아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육아불안과 지역에서의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육아지원 상담과 육아를 지원하는 지역네트워크 만들기를 추진하겠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급

의료보험에서 지급하는 현재의 출산 일시금(2009년 10월부터 42만엔)을 재검토하여, 정부로부터의 조성금을 합하여 출산 시에 55만엔을 지급하겠습니다.

1) (재)민주정책연구원(역). 『일본 민주당 정책자료집』(2009) 참조.

보육 서비스의 충실

보육소 입소를 기다리는 대기아동이 약 4만명 있는 반면에 유치원은 정원에 미달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기아동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의 여유교실이나 통폐합 등으로 인해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학교시설 등을 이용한 인가보육소 분원의 증설, 가정보육제도(보육마마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장래에는 인가보육소의 증설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보육 서비스의 ‘양’의 확보와 함께 유치원은 문부과학성, 보육소는 후생노동성이라는 이원행정을 수정하여 유치원과 보육소의 일원화를 추진하는 등 취학 전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에 노력하겠습니다.

IV. 시민참여형 매니페스토의 작성 프로세스와 정책사례

1. 시민참여형의 유형

- 가. 의견청취형 : 매니페스토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청취, 반영
- 나. 제안모집형 : 시민(단체)의 정책제안을 모집, 매니페스토 작성
- 다. 공동작성형 :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검토구성, 매니페스토 작성
- 라. 시민위탁형 : 시민(단체)에 매니페스토안 작성, 최종 매니페스토 작성
- 마. 후보자응립형 : 시민(단체)가 매니페스토(안)을 작성, 실행할 수 있는 후보자를 응립

※ 정책분야별 또는 지역별 정책공약은 그 지역민들의 이해와 요구, 그리고 선호도를 반영하는 지역밀착형이자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작성 초기부터 해당 지역민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매니페스토 정책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작성 프로세스

- 가.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 또는 직능단체로부터 의견, 제안의 모집(제안 전 또는 안을 제시한 후)
- 나. 수렴한 정책에 대한 설명회, 공개토론회에서 홍보와 의견 모집
- 다. 시민, 의원 등과의 공동 검토팀의 설치, 연구회, 위원회의 설치를 통한 검증
- 라. 시민 그룹 등과의 매니페스토 협정, 공동 매니페스토의 선정 및 발표

3. 시민매니페스토의 정책사례²⁾

- 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홈페이지(<http://www.manifesto.or.kr>)에서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정책제안을 반드시 참조할 필요 있음
- 나.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정책제안 지역 중 다음에 게재된 인천의 사례는 인천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임
 - 시민 매니페스토는 해당 지역 시민들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제안된 정책과제로서 유권자의 정책 이해와 선호도를 반영하고 있는 만큼 후보자의 지지율 제고에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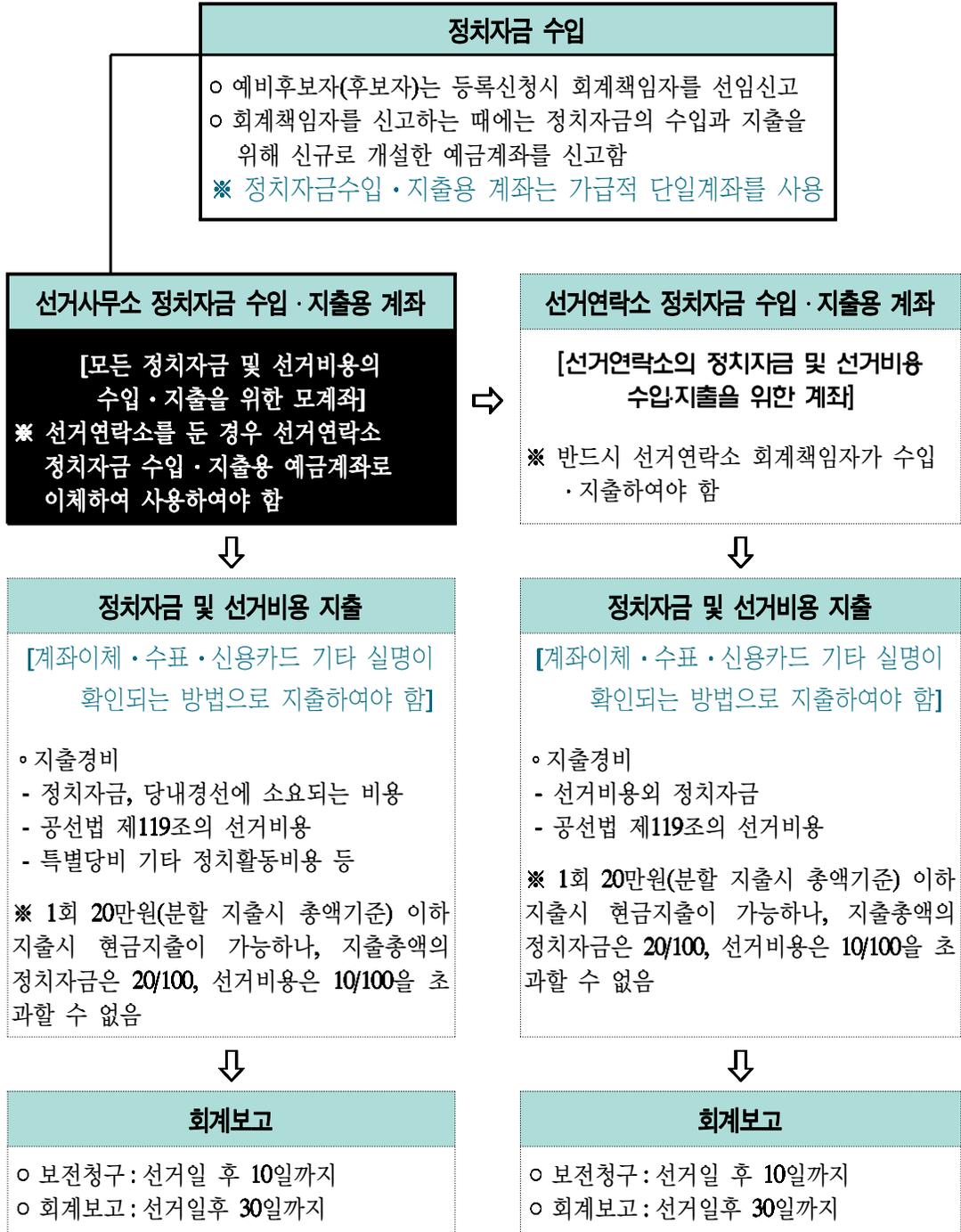
2)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2010 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정책제안 참조.

순위	부 문	정책 아젠다	퍼센트
1	행정개혁 (교육)	교육수준 및 환경 제고 - 인천시 우수학생 유출 방지 대책	19.2
2	지역경제 (복지)	고용과 복지 관련 예산 확충 -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임금의 확대에 대한 의견 - 저소득 여성세대주에 대한 취업 알선과 교육 우선배치 및 생계 지원 - 빈곤층의 복지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통합 지원하는 고용복지위원회의 신설	15.9
3	도시계획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활성화 - 지역의 정체성을 반영한 도시 재생 - 도시마케팅적인 접근에 의한 구도심 재활성화 전략의 수립 - 도시계획 2025 전면 수정 추진	14.9
4	사회복지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과 공공보육시설 확충 - 방과 후 보육시설 확충	10.8
5	문화 (도시계획)	역사와 문화적 정체성을 살리는 도시계획 - 문화영향평가제 도입 - 도심문화광장 만들기	8.8
6	환경	연안습지 보전과 도서관광 활성화	8.3
7	교육 (복지)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직영급식 및 무상급식의 확대	7.0
8	환경	녹지 보전과 생태공원 확충 - 계양산 골프장 및 검단~장수간 도로 문제에 대한 반대 의견	6.4
9	도시계획	도시계획에 있어서 시민참여 확대	5.7
10	문화	문화정책의 기초 전환과 수립 - 거버넌스 시스템의 도입	2.9

※ 출처 : 2010시민매니페스토만들기 인천본부. 『2010인천시민 매니페스토』 (2010.1). 31쪽

V. 선거회계 실무

1.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수입 · 지출 흐름도



2. 정치자금 수입·지출을 위한 사전 준비

가. 예비후보자등록前 정치자금 수입·지출 방법

(1)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신규 개설(단일계좌)

- 입후보예정자 명의로 반드시 '신규'로 개설(주거래 은행)
- 인터넷뱅킹 또는 폰뱅킹 신청
- 체크카드 발급신청 ⇒ 2~3매

(2) 입후보예정자 자산(또는 차입금) ⇒ 신규로 개설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또는 수표 입금)

(3) 지출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계좌에서 해당 업체의 예금계좌로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지급

- 선거준비사무소 임대보증금 및 계약금
- 선거준비사무소 집기·사무용품 등 렌탈료
- 홍보·기획사 계약금, 여론조사비용 등

※. 부득이하게 수표로 지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표 사본을 복사해둬야 함

나. 회계책임자 선임時 고려사항

- (1)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규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자
- (2) 선거회계 실무경험이 있는 자
- (3) 한글·엑셀 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 가능자
- (4) 인터넷뱅킹·폰뱅킹 등 유경험자
- (5) 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책임감이 강한 자
- (6)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는 겸직이 가능

3. 선거회계의 기본 원칙

가.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과 지출

- 예비후보자등록시 선관위에 선임·신고한 회계책임자만이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할 수 있음

⇒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4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한 수입·지출

- 선거와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된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를 통해 수입하고 지출하여야 함. 또한 지출용 예금계좌는 반드시 '단일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 정치자금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400만원 이하의 벌금

다.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지출

- 선거에 소요되는 모든 정치자금은 반드시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계좌이체·수표발행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수입하고 지출하여야 함

⇒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400만원 이하의 벌금

라. 三位一體

- 정치자금 수입·지출용 예금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장부, 그리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일치되어야 선거회계를 완벽하게 마감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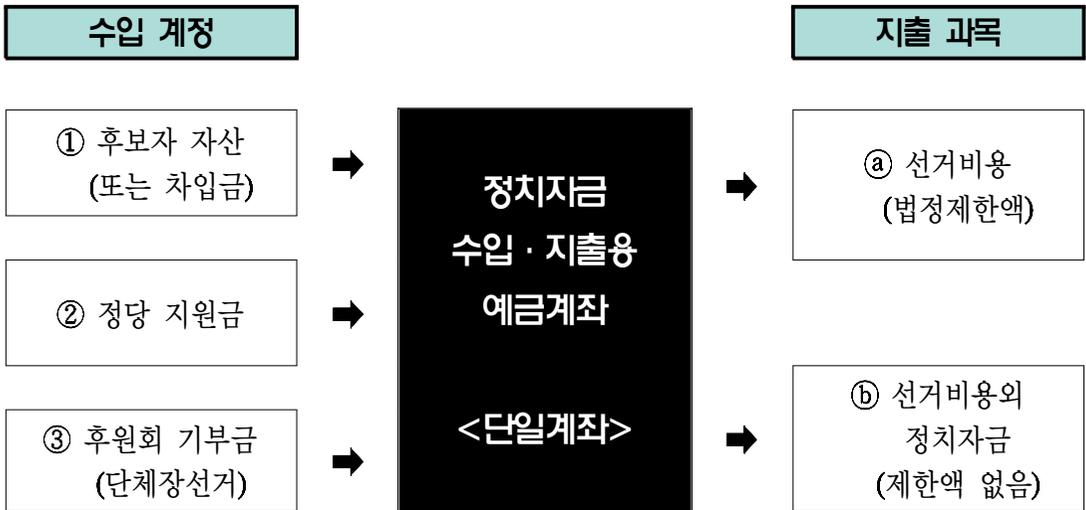
4. 선거회계 유의사항

가. 법정선거비용제한액 준수

-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 총액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해서는 안됨

⇒ 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 초과지출 한 혐의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됨(ex: 허범도후보 회계책임자)

나. 선거자금 수입 계정 및 지출과목 개요도



다. 선거회계 기본 지침

- ① 예산서를 정교하게 수립하라
- ② 이면계약서를 체결하지 마라
- ③ 현금 인출을 하지 마라
- ④ 회계책임자를 교체하지 마라

5. 선거비용 예산(안) 편성 기준표

항 목 별	소요 예산(안)	보전여부
① 예비후보자 선거운동비용 - 예비후보자 명함,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 예비후보자홍보물 기획·디자인·제작비용 - D/M 봉투작업 및 우편발송요금 - 홈페이지, 어깨띠·표지·문자메시지 등		미 보 전
② 법정홍보물 기획·디자인 및 제작 - 후보자명함 - 선거벽보, 선거공보 - 선거공약서, 배송비용 등		보전단가
③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 예비후보자 : 수당·실비 -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 연설원 : 수당·실비 => 미정		미 보 전 전액보전
④ 간판·현판·현수막 및 어깨띠 등 -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현수막 - 읍·면·동 현수막 - 어깨띠, 상의(3만원)·표찰·마스코트·수기		보전단가
⑤ 신문광고·방송광고(CF) -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만 해당		보전단가
⑥ 후보자 방송연설 및 인터넷광고 - TV·라디오 각 5회 이내 - 인터넷광고 제작 및 매체비용		보전단가
⑦ 전화홍보 등 - 임시전화 설치비·기본료 - 전화홍보시스템 임차비용 - 선거운동용 전화요금(사무소·연락소)		보전단가
⑧ 유세차량 - 유세차량 렌탈비용 - 영상홍보물, 로고송(인격권·저작권료)		보전단가
⑨ 기타 비용 - (예비)후보자 활동비용, 수행원 식대 - 선거사무소·연락소 다과류 구입비용 -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기타		미 보 전 (후보자·수행원 등 식대는 보전)
⑩ 예 비 비		미 보 전
합 계	선거비용제한액 이내	

6. 선거비용외 정치자금 예산(안) 편성 기준표

항 목 별	소요 예산(안)	반환여부
① 법정기탁금		반 환
② 경선에 소요되는 비용, 경선거탁금		미 보 전
③ 여론조사비용		미 보 전
④ 예비후보자공약집 제작비(단체장선거)		미 보 전
⑤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설치·유지비 - 임대료 - PC·집기류 등 렌탈료 - 업무용 전화·인터넷 설비비 - 재세공과금 - 개소식 : 초대장·행사비용, 다과류 - 콜센터 칸막이 및 부스 설치비		미 보 전
⑥ 후보자·배우자 승용차량 - 차량 렌탈료 - 운전자 노임 - 유류비 등		미 보 전
⑦ 선전물 첨부차량 등 운영비 - 선전물 첨부차량 렌탈료 - 업무용 차량 렌탈료 - 유류비·주차료 등		미 보 전
⑧ 선거일 후 잔무처리비용 - 회계책임자 수당·실비 - 회계보고 관련 비용		미 보 전
⑨ 점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약서		반 환
⑩ 예비비 - 선거사무소·연락소 철거비용 - 사무소 내부첨부용 선전물 - 당선사례 현수막 - 선거사무소 해단식, 기타		미 보 전
합 계	제한액 없음	

부록1.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방법 일람표

1.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 및 방법 ⇒ 예비후보자등록 직후부터 5. 19(수)까지

구 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방법	
선거사무소 (법 제6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소 수 : 1개소 ○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 제한 없음 	
선거사무관계자 (법 제6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6명)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 5명 회계책임자 : 1명 ○ 기초단체장선거(4명)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 3명 회계책임자 : 1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의회의원선거(3명)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 2명 회계책임자 : 1명 ※ 장애인 예비후보자는 활동보조인 1명을 추가로 선임할 수 있음
예비후보자명함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9cm × 5cm 이내 ○ 명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지지호소도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예비후보자와 수행원 1인 ② 배우자와 수행원 1인 : 예비후보자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가능함 ③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선거사무원, 장애인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④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직계존비속 모두 : 예비후보자와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명함 배부 및 지지호소 가능함 ※ 수행원은 예비후보자 또는 배우자와 함께 다닐 때만 명함 배부·지지호소가 가능하며, 선거사무관계자는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경우에만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가 가능함 	

구 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방법	
예비후보자 홍보물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수 : 1종 ○ 수 량 : 세대수의 1/10 이내 ○ 규 격 : 27cm × 19cm 이내 ○ 면 수 : 8면 이내 <p>※ 지방의원선거 예비후보자는 8면을 모두 자신의 홍보사항을 게재하여 작성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방법(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 준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지를 포함한 전체면수의 1/2이상의 면수에 선거공약 및 이에 대한 추진계획으로 각 사업목표·우선순위·이행절차·이행기한·재원조달 방안을 게재하여야 하며, 이를 게재한 면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예비후보자 공약집 (법 제60조의4)	<p><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만 제작·판매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 수 : 1종(도서의 형태로 제작) ○ 규격·면수·작성수량 : 제한 없음 ○ 배부방법 :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성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후보자 홍보에 관한 사항은 전체 면수의 1/10이내로 게재할 수 있고,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 관한 사항은 게재할 수 없음
전자우편 (법 제60조의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 법 : 예비후보자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전송 ○ 『선거운동정보』 전송시 유의사항 준수 	
홈페이지 (법 제5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 :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언제든지 선거운동이 가능함 ○ 방 법 :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모든 사항 ○ 유의사항 : 학력은 반드시 『정규학력』 만 게재 	

구 분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운동방법
어깨띠·표지 (법 제60조의3)	<p>○ 예비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점퍼·조끼 등)’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가능 <p>※ 예비후보자에게만 어깨띠·표지를 착용하고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사무관계자 등은 착용할 수 없음 단, 법정선거운동기간(5.20~6.1)에는 선거사무관계자 모두 착용·휴대·부착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p>
전화선거운동 (법 제60조의3)	<p>○ 예비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호소 가능 <p>※ 예비후보자기간에는 예비후보자만 전화를 이용하여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단, 법정선거운동기간(5.20~6.1)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면 누구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p>
문자메시지 (법 제60조의3)	<p>○ 예비후보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총 5회(후보자 기간 포함) 이내의 범위에서 문자메시지 전송이 가능 <p>※ 보조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지 않고, 순전히 휴대폰으로만 보내는 경우 횟수나 수량 제한 없음</p> <p>※ 예비후보자기간에는 예비후보자만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 발신번호를 반드시 명시 단, 법정선거운동기간(5.20~6.1)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면 누구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p>

2. 선거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구 및 방법 ⇒ 5. 20(목)부터 6. 1(화)까지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구 (법 제61조)	○ 선거사무소 : 1개소 ○ 선거연락소 : 선거사무소를 두지 않는 구·시·군 또는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개소		○ 선거사무소 : 1개소
※ 외벽 간판·현판·현수막 : 수량 제한 없음 ⇒ 전광·형광 등의 방법으로 설치 가능하나, 애드벌룬은 불가			
선거운동기구 외벽 선전물 등 첨부 (규칙 제27조)	<선거사무소> ○ 첨부수량 : 각 50매 이내	<선거사무소> ○ 첨부수량 : 각 30매 이내	<선거사무소> ○ 첨부수량 : 각 20매 이내
	<선거연락소> ○ 첨부수량 : 각 30매 이내	<선거연락소> ○ 첨부수량 : 각 20매 이내	
	※ 첨부할 수 있는 선전물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단체장선거)·후보자 사진		
선거사무관계자 (법 제62조)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장 : 1명 ○ 선거사무원 : 구·시·군의 수 또는 국회의원지역구의 수(그 수가 10인 미만인 때는 10인) ○ 회계책임자 : 1명	<선거사무소> ○ 선거사무장 : 1명 ○ 회계책임자 : 1명	<시·도의원선거> ○ 선거사무장 : 1명 ○ 선거사무원 : 10명 ○ 회계책임자 : 1명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 : 1명 ○ 선거사무원 : 읍·면·동수 ○ 회계책임자 : 1명	<선거연락소> ○ 선거연락소장 : 1명 ○ 회계책임자 : 1명	<자치구·시·군의원선거> ○ 선거사무장 : 1명 ○ 선거사무원 : 8명 ○ 회계책임자 : 1명
	※ 선거사무원 : 읍·면·동수의 3배 수에 5를 더한 수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벽보 (법 제6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길이 53cm, 너비 38cm<길이를 “상하”로 하여 작성> ※ 반드시 법정규격을 준수하여야 하며, 크거나 작을 경우 첨부하지 아니함 ○ 지 질 : 100g/m² 이내의 종이 ○ 색 도 : 제한없음(개정 2005. 8. 4) ○ 작성수량 및 제출수량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2010. 5. 10(월)까지 공고함>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후보자만의 사진을 말함)·성명·기호·소속 정당명·경력·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제출기한 : 2010. 5. 21(금). 18:00까지 ○ 제출장소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벽보첨부 : 2010. 5. 23(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첨부 <p style="text-align: center;">※ 유의사항 : 학력은 반드시 ‘정규학력’과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만을 게재하여야 함</p>		
선거공보 (법 제65조)	<p>[책자형 선거공보(점자형 선거공보 포함)] : 각 1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길이 27cm 너비 19cm 이내 ○ 면 수 : 단체장선거(12면 이내) / 지방의원선거(8면 이내) ※ 법정규격보다 크게 제작하면 발송하지 아니함 ○ 지질·색도 : 제한 없음 ○ 작성수량 및 제출수량 :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2010. 5. 10(월)까지 공고함>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 정당명·경력·정견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선거공보 2면’에 반드시 게재하여야 함<점자형 선거공보도 동일하게 게재하여야 함> 재산상황,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직업·학력·경력 등 인적사항 기타 소명자료 ○ 제출기한 : 2010. 5. 24(월). 18:00까지 ☞ 부재자용 선거공보는 2010. 5. 21(금)까지 선거벽보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제출장소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장소 ○ 공보발송 : 2010. 5. 28(금)까지 매세대에 우편발송 ※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책자형 선거공보’ 또는 ‘점자형 선거공보’라고 표시하여야 하며, 점자형 선거공보의 앞면에는 ‘선거의 종류·선거구명·후보자의 성명’을 반드시 한글로 게재하여야 함 ⇒ 점자형 선거공보 2부와 ‘해독확 인필증’을 함께 제출함 ⇒ 제출방법 : 500부 단위로 간지를 삽입하거나 묶음으로 제출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공약서 (법 제6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수 및 면수 : 1종·16면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수 및 면수 : 1종·12면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부시기 : 5. 20(목)~6. 1(화)<선거운동기간중> ○ 제작수량 :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선관위가 5. 10까지 공고함) ○ 배부방법 : 후보자와 그 가족,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공약서를 배부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우편발송(전자공약서 제외)·호별방문이나 가두 살포·특정 장소에 비치하는 방법으로는 배부할 수 없음 ※ 후보자의 기호·성명·사진·학력·경력, 그 밖에 후보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1면 이내로 게재할 수 있음 		
읍·면·동 현수막 (법 제6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시권자 : 후보자 ○ 게시기간 : 2010. 5. 20(목)~6. 2(수) ○ 규격 및 제질 : 10제곱미터 이내, 천으로 제작 ⇒ 애드벌룬·네온사인·형광 기타 전광에 의한 방법은 금지됨 ○ 첩부수량 : 읍·면·동마다 각 1매 ○ 게재사항 : 선거운동을 위한 홍보사항을 게재할 수 있으며, 반드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 유의사항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은 금지됨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어깨띠 등 소품 (법 제68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용할 수 있는 자 : 후보자와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중 신고 된 1인), 선거사무관계자, 장애인후보자의 활동보조인 ○ 착용인원 : 착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 ○ 착용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게재사항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어깨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길이 240cm 너비 20cm이내 ※ LED 발광시트 등을 이용한 어깨띠도 가능함 </td> <td style="width: 50%; vertical-align: top;"> <p><소 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上衣) : 3만원 이내의 점퍼·조끼·티셔츠 등 ○ 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p style="text-align: center;">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p> </td> </tr> </table>			<p><어깨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길이 240cm 너비 20cm이내 ※ LED 발광시트 등을 이용한 어깨띠도 가능함 	<p><소 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上衣) : 3만원 이내의 점퍼·조끼·티셔츠 등 ○ 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p style="text-align: center;">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p>
<p><어깨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규 격 : 길이 240cm 너비 20cm이내 ※ LED 발광시트 등을 이용한 어깨띠도 가능함 	<p><소 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의(上衣) : 3만원 이내의 점퍼·조끼·티셔츠 등 ○ 표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p style="text-align: center;">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p>				
신문광고 (법 제6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주체 : 시·도지사 후보자 ○ 광고기간 : 2010. 5. 20(목)~5. 31(월) ○ 광고매체 : 일간신문사 ○ 광고규격 및 색도 : 제한 없음 ○ 광고횟수 : 총 5회 이내(5회 + 인구를 초과하는 시·도의 경우 300만을 초과하는 때 100만마다 1회 추가) ※ 광고근거 표시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	-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방송광고 (법 제70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주체 : 시·도지사 후보자 ○ 광고기간 : 2010. 5. 20(목)~6. 1(화) ○ 광고매체 : TV 및 라디오 방송시설 ○ 광고시간 : 1회 1분 이내 ○ 광고횟수 : 지역방송시설을 이용하여 TV·라디오 방송사별 각 5회 이내 	-	-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법 제7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연설자 : 단체장선거 후보자 ○ 연설시간 : 1회 10분 이내 ○ 방송연설신고 : 방송일전 3일까지 방송시설이용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방송 시설명·이용일시·소요시간·이용방법 등을 서면으로 신고 ○ 방송시설 및 일정 지정·공고 : 2010. 5. 10(월)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공고·통지함 ○ 방송연설내용 : 후보자의 정견·성명·기호·소속 정당명(마트·심벌 포함)·경력, 연설요지 및 통계자료 등 <p style="margin-left: 20px;">※ 방송연설 3일전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위법한 선거운동이 되어 당해 선거비용이 보전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설횟수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 사별로 각 2회 이내 	-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방송시설주관 후 보 자 연설의 방송 (법 제72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주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방송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연설자 : 후보자 ○ 연설방송 : 편집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거구 단위로 모든 후보자에게 공평하게 방송 ○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경력 방송 (법 제7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주체 : 한국방송공사 ○ 방송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경력방송 원고 제출마감 : 2010. 5. 14(금)<후보자등록신청마감일>까지 ○ 방송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지사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3회 이상 - 구·시·군의 장선거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별로 각 2회 이상 ○ 비용부담 : 한국방송공사 		-
방송시설주관 경력 방송 (법 제7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송주체 : 한국방송공사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방송시설 ○ 방송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방송방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원고에 의하여 후보자별로 공평하게 방송 ○ 비용부담 :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공개장소 에서의 연설·대담 (법 제79조)	<p><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마다 1대 ○ 선거연락소마다 1대 ○ 확성장치 : 부착용·휴대용 각 1조 ○ 녹화기 규격 <li style="padding-left: 20px;">후보자용 10㎡, 선거연락소용 5㎡ 	<p><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마다 1대 ○ 확성장치 : 부착용·휴대용 각 1조 ○ 녹화기 규격 : 5㎡ 	<p><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마다 1대 ○ 확성장치 : 휴대용 1조 ○ 녹화기 규격 : 3㎡
	<p>○ 연설·대담자</p> <p>-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후보자 등)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중 지정한 자</p>		
	<p>○ 연설대담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p> <p>○ 연설대담장소 :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p> <p>○ 연설대담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를 사용하는 연설·대담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 까지 가능함 ⇒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를 사용할 수 없음</p> <p>○ 연설대담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 또는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 실시 · 다른 사람이 개최한 옥내모임에 일시적으로 참석하여 연설·대담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장소에 설치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 		
	<p><연설·대담 금지 장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단, 위에 적시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는 제외 ○ 선박·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시설·연구시설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법 제82조의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 기 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방 법 :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 게시 및 전자우편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 <p>※ 후보자는 예비후보자 기간을 포함하여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5회까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음. 단, 순전히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경우 횟수나 수량 제한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행위.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인터넷광고 (법 제82조의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주체 : 후보자 ○ 광고매체 : 인터넷언론사 및 포털사이트 홈페이지 ○ 게재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광고횟수 : 제한 없음 ○ 광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언론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 게재 : 팝업·베너·동영상 등 <p>※ 광고근거 등 표시 : ‘이 인터넷 광고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7에 의한 김민주 후보자의 선거광고입니다’</p>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p>단 체 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법 제81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개최주체 : 법 제81조에 해당되지 않는 단체 ○ 초청대상 : 후보자 ○ 개최신고 : 개최단체가 개최일전 2일까지 서면 신고 ○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단체 <p>※ 후보자의 프로필 또는 정견 등을 담은 비디오테이프는 대담·토론회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상영할 수 없음</p>		
<p>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법 제8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할 수 있는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 “방송시설”이란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을 말함 ·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사업자 · 인터넷언론사, 뉴스통신사업자 ○ 개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장선거 : 2010. 4. 3(토)~5. 19(수) · 모든 후보자와 대담·토론자 : 2010. 5. 20(목)~6. 1(화)<선거운동기간중> ○ 초청대상 : 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 후보자, 후보자가 지정한 대담·토론자 ○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주최하는 언론기관 		

구 분	시·도지사선거	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 지방의회의원선거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법 제82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최기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개최횟수 : 1회 이상 ○ 초청대상자 : 후보자중에서 1인 또는 수인 ※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계방송 시작전에 불참 사실을 고지하며, 불참하는 때 회마다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체 : 구·시·군 선거방송토론위 ○ 중계방송 : 공영방송사 또는 다른 지상파 방송사나 종합유선방송사 	-
자동차·선박 선전물 부착 운행 (법 제91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대수 :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마다 5대·5척 이내 ○ 첨부할 수 있는 선전물 종류 : 선거벽보·선거공보·선거공약서(단체장선거) ○ 첨부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 : 선전물의 종류별 각 5매 이내 · 선 박 : 선전물의 종류별 각 10매 이내 ※ 선전물을 부착한 자동차 및 선박을 운행할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받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행대수 : 후보자마다 5대·5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의원 : 후보자마다 2대·2척 ○ 기초의원 : 후보자마다 1대·1척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 호소 (법 제105조, 제10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체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이면 누구나 가능 ○ 기 간 : 2010. 5. 20(목)~6. 1(화) <선거운동기간중> ○ 장 소 :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 ○ 방 법 : 자원봉사자는 5인(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 10인)을 초과하지 않는 방법으로 거리 행진 또는 연호, 선거구민에게 인사하거나 지지 호소 ○ 금지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음 · 시설물을 설치·게시하거나 인쇄물을 배부하면서 지지호소 할 수 없음 ※ 다만,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는 후보자·배우자·선거사무관계자들이 어깨띠 등 소품을 착용하고 인원수의 제한없이 단체로 할 수 있음 		

부록2. 중앙선관위 및 시·도선관위 연락처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서별 연락처

실·국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위원장실	비서실	02)503-0321	02)533-8848
상임위원실	비서실	02) 503-0322	02) 503-3130
사무총장실	비서실	02) 503-0522	02) 503-2010
사무차장실	비서실	02) 503-0523	02) 507-2072
공보관	비서실	02)502-8656	02) 507-2632
	공보담당관	02) 503-2791	02) 507-2632
	홍보담당관	02) 503-2792	02) 504-2763
감사관	비서실	02) 502-9052	02) 502-9065
	감사담당관	02) 502-9053	02) 502-9065
총무과	서무계	02) 503-0871	02) 507-0120
	경리계	02) 503-0331	
	비상계획	02) 503-3513	
인사과	인사과	02)503-6875	02)507-2707
기획조정실	비서실	02) 502-6846	02) 502-6841
	기획재정관	02) 503-0872	02) 507-2204
	행정정보화담당관	02) 581-7616(조직)	02) 581-7617
		02) 503-7616(행정)	
		02) 504-0271(정보)	
		02) 504-2761(전산)	
	국제협력담당관	02) 503-0883	02) 503-0884
	시설관리담당관	02) 504-2760	02) 503-0328
	선거기록보존소	02) 503-0863	02) 503-0864
선거실	비서실	02) 502-6845	02) 507-2578
선거기획관	비서실	02) 502-8655	02) 502-4532
	선거과	02) 503-2093(공직)	02) 507-2631
		02) 503-0068(위탁)	02) 503-0063
	선거정보화과	02) 502-4515	02) 503-7720

실·국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제기획관	비서실	02) 503-5808	02) 502-1939
	법제과	02) 503-2190,1796	02) 503-2481
	법규해석과	02) 503-2790,9675	02) 503-1539
	법규안내센터	02) 503-1790,1791	02) 503-1792
		02) 504-1794	
02) 503-9676			
지도정책관	비서실	02) 502-6515	02) 502-1939
	지도1과	02) 503-2095	02) 502-4742
	지도2과	02) 502-8475	02) 502-8477
재외선거국	비서실	02) 503-0631	02) 503-0633
	재외선거정책과	02) 507-4351	02) 507-4352
		02) 503-0635	
	재외선거관리과	02) 504-5354,5355	02) 504-5356
재외선거지도과	02) 503-0648,0649	02) 504-5350	
정당지원국	비서실	02) 523-6481	02) 581-7613
	정당과	02) 523-6482,6483	02) 523-6469
	정치자금과	02) 523-6485	02) 523-6484
	의정지원단	02) 780-2684,2685	02) 780-2686
선거연수원	비서실	02) 764-0211	02) 765-2394
	교수기획부	02) 764-0322	02) 765-2394
	직무교육과	02) 765-2391	02) 764-0328
	시민교육과	02) 764-0213	02) 764-0241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사무국	02)3473-9947 02)3473-9948	02) 3473-9949
인터넷선거보도 심의위원회	사무국	02)2055-0029 02)2055-0030	02) 2055-0028

2. 시·도선관위 연락처

위원회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2)764-0313	02)764-0313	[110-712]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6
		02)764-0314		
	지도과	02)762-3939	02)3673-2629	
		02)766-6384		
	홍보과	02)764-0315	02)765-7917	
		02)766-6383		
	업무지원과	02)741-4226	02)741-4228	
		02)741-4227		
부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51)851-7773	051)851-7783	[611-829] 부산시 연제구 연제로 23
		051)852-8247		
	지도과	051)851-7774	051)851-7792	
		051)852-8244		
	홍보과	051)851-7770	051)851-7780	
		051)852-8248		
	업무지원과	051)851-7791	051)851-7793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53)767-2583	053)767-2585	[706-838] 대구시 수성구 신천동로 304
		053)768-5339		
	지도과	053)764-3939	053)764-2066	
		053)768-4339		
	홍보과	053)767-2584	053)765-2584	
		053)768-2839		
	업무지원과	053)764-4325	053)768-2585	
		053)764-4326		

위원회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인천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32)428-2143	032)421-4149	[405-835] 인천시 남동구 백합길 25
		032)428-0976		
	지도과	032)425-3939	032)438-3874	
		032)435-9923		
	홍보과	032)438-3873	032)432-4666	
		032)422-1190		
	업무지원과	032)424-8115	032)424-8117	
		032)424-8116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62)382-7603	062)382-1483	[502-827] 광주광역시 서구 목련1길 20
		062)382-5383		
	지도과	062)382-4773	062)382-3988	
		062)382-5384		
		062)383-5385		
	홍보과	062)382-7607	062)382-7605	
		062)382-5385		
	업무지원과	062)382-7614	062)382-7616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42)610-3910	042)610-3929	[302-830] 대전서 구월평2동 282-1 (8층)
	지도과	042)610-3939	042)610-3949	
	홍보과	042)610-3950	042)610-3969	
	업무지원과	042)610-3970	042)610-3989	

위원회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울산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52)294-9256	052)292-4245	[681-822] 울산 중구 구교로 105
		052)293-9256		
	지도과	052)294-9257	052)294-8313	
		052)293-9251		
	홍보과	052)294-9259	052)293-4244	
		052)294-9250		
업무지원과	052)294-9259	052)294-9322		
	052)294-9250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31)259-4890	031)259-4891	[442-81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보은길 81
		031)249-5611	031)259-4892	
	지도과	031)249-5616	031)259-4894	
		031)256-4893		
	경기북부 지도TF팀	031)874-9766	031)874-9558	
	홍보과	031)259-4895	031)259-4896	
031)249-5630				
업무지원과	031)259-4897	031)259-4898		
	031)249-5631			
강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33)251-4408	033)256-1286	[200-853] 춘천시 동면 강변로 194
		033)244-4352		
	지도과	033)251-4409	033)257-1286	
		033)244-4355		
	홍보과	033)257-4410	033)241-1286	
		033)244-4354		
업무지원과	033)257-4404	033)241-1285		
	033)257-4405			

위원회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43)237-3934	043)237-3936	[361-825] 청주시 흥덕구 새터5길 4(비하동)
		043)237-3935		
	지도과	043)237-3939	043)237-3937	
		043)237-3938		
	홍보과	043)237-3940	043)237-3942	
		043)237-3941		
	업무지원과	043)237-3946	043)237-3948	
		043)237-3947		
충청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42)487-3894	042)487-3897	[302-122] 대전광역시 서구 시청북2길 16 (둔산2동1302)
		042)472-8422		
	지도과	042)487-3895	042)482-7168	
		042)472-8423		
	홍보과	042)487-3896	042)482-7169	
		042)472-8424		
	업무지원과	042)487-3705	042)487-3707	
		042)487-3706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63)284-3046	063)288-7974	[560-827] 전북 전주시 완산구 문화로 73
		063)285-3046		
	지도과	063)284-3939	063)284-3999	
		063)285-3940		
	홍보과	063)284-3045	063)287-1461	
		063)283-2293		
	업무지원과	063)282-1155	063)285-5678	
		063)282-1153		

위원회명	부서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재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62)374-8178	062)381-0893	[502-715] 광주광역시 서구 목련1길 20
		062)374-8794		
	지도과	062)372-3939	062)381-0896	
		062)374-8791		
	홍보과	062)374-8792	062)381-0892	
		062)374-8793		
업무지원과	062)374-8712	062)381-0891		
	062)374-8713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53)943-3113	053)954-6331	[702-839] 대구시 북구 연암로 60
	지도과	053)943-3114	053)943-3116	
	홍보과	053)943-3115	053)943-3122	
	업무지원과	053)943-0426	053)943-0427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55)275-4327	055)262-6740	[641-241] 경남 창원시 북16로 258
	지도과	055)275-4328	055)283-2420	
	홍보과	055)275-4329	055)262-6750	
	업무지원과	055)283-3282	055)283-3283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064)722-4495	064)758-0227	[690-824] 제주시 연삼로 530
		064)702-9523		
	지도과	064)723-3939	064)721-4497	
		064)702-9519		
	홍보과	064)722-0379	064)723-0379	
		064)702-9522		
업무지원과	064)758-4494	064)758-5227		